

# 어린이제품 표시사항 작성 가이드북

GuideBook



어린이제품 가이드북은 2021년 11월 기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품목별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KPSA**  
한국제품안전협회  
Korea Products Safety Association



이 가이드북은 사업자가 **제품안전관리제도**에  
규정하는 **표시사항**을 보다 효율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으로  
**제품별 특성**에 따라 **안전기준**을  
참고하여 제작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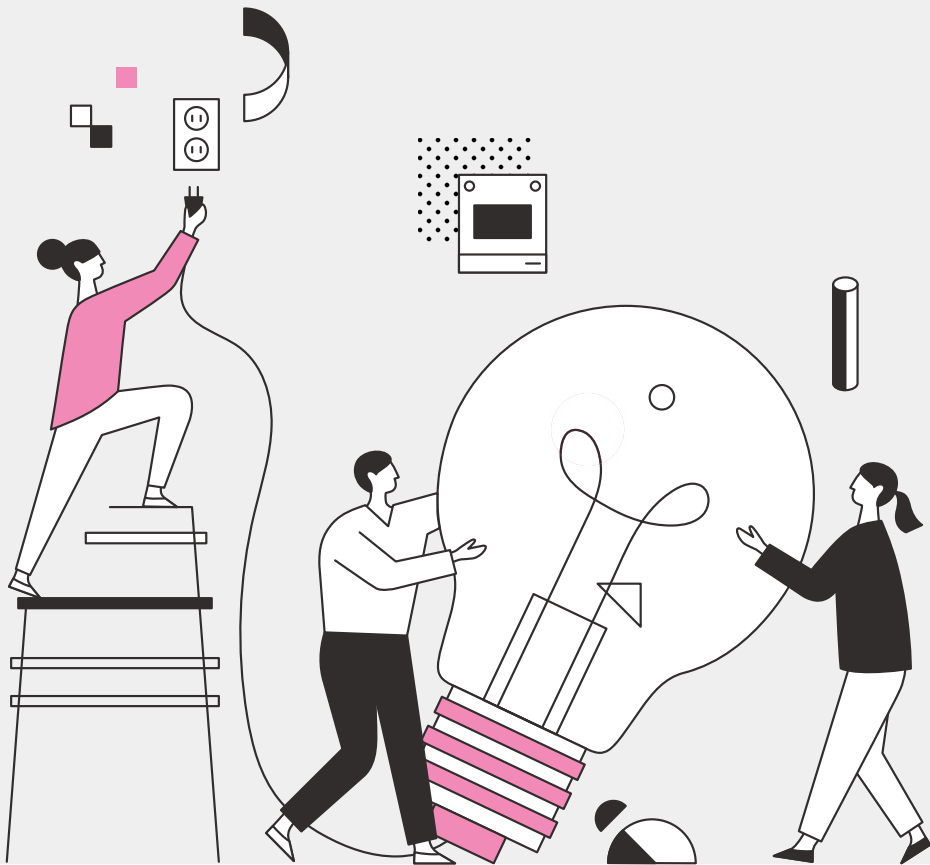
※ 어린이제품 가이드북은 2021년 11월 기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품목별 안전기준 부속서에  
따라 제작되었습니다.

제품안전 관련 표시사항은  
소비자 뿐 아니라 사업자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 GuideBook CONTENTS



# 1

## 제품안전관리제도

|                   |    |
|-------------------|----|
| 제도 개요             | 06 |
| 표시사항 구성           | 07 |
| 제품 및 포장에 표시하는 시기  | 08 |
| 안전기준 열람 방법        | 08 |
| 제품 표시사항 위반 시 처분사항 | 09 |
| 참고사항              | 10 |

# 2

## 품목별 표시사항

|          |    |
|----------|----|
| 안전인증     | 15 |
| 안전확인     | 31 |
| 공급자적합성확인 | 6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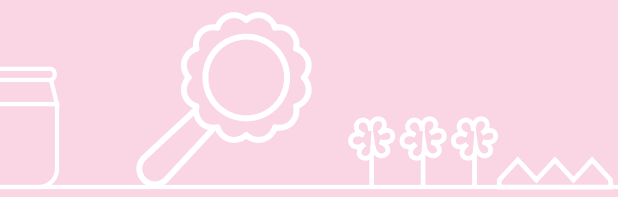
## 부록

|             |    |
|-------------|----|
| 지정 시험 기관    | 80 |
| 안전관리대상 세부품목 | 8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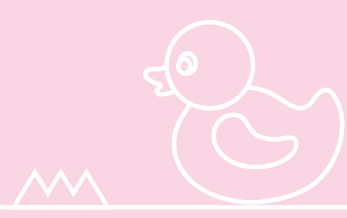
|       |    |
|-------|----|
| Index | 84 |
|-------|----|

|    |    |
|----|----|
| 색인 | 86 |
|----|----|





# 1



## 제품안전관리제도



제도 개요

표시사항 구성

제품 및 포장에 표시하는 시기

안전기준 열람 방법

제품 표시사항 위반 시 처분사항

※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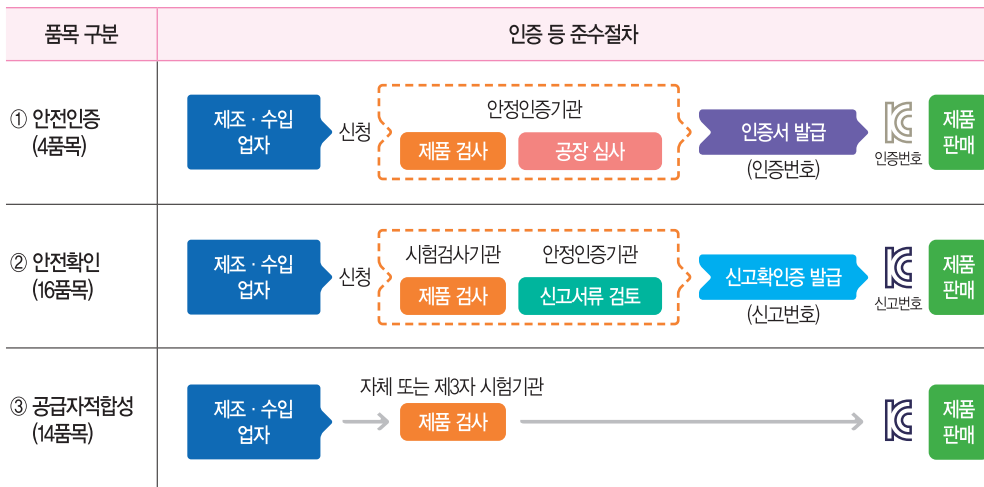


## ① 제도 개요

### 제품시장 출시 전(사전 인증, 시험 의무 부여)

어린이제품은 ① 안전인증, ② 안전확인, ③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3가지로 안전관리 수준을 구분하고 있으며, 국내 제조·수입업자가 ① 안전인증, ② 안전확인, ③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품목을 국내에서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품 출시 전에 반드시 시험·인증을 받아야 하고, 해당 제품에는 KC표시 부착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 수준별 시험·인증 절차〉



※ 법적근거 :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제17조, 제22조, 제25조

### 제품시장 출시 후(제품 표시사항 및 법적 안전기준 준수 의무 부여)

국내 제조·수입업자는 사전인증 등을 거쳐 제품을 시중에 출시한 후에도, 법에서 정한 안전기준과 함께 품목별 표시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면서 제품을 유통할 의무가 있으며, 정부(국가기술표준원)는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연중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제품 표시사항과 법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제품의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와 내용에 따라 **제품 수거, 개선조치 등을 명령 또는 권고**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 ① 표시사항 구성

어린이제품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및 동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KC표시, 주의·경고표시와 함께 품목별 안전기준 부속서에서 정하는 표시사항(모델명, 제조년월 등)을 조합하여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동 법 시행규칙에 따른 KC표시

**안전인증 대상 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표시 기준과 방법

**안전확인신고 대상 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른 표시 기준과 방법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른 표시 기준과 방법

XXXXXXXXXXXXXXXXXXXX

— 안전인증 대상 제품 :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의 안전인증번호

— 안전확인신고 대상 제품 :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의 신고확인증 번호

—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 : 번호 미기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별표 11], [별표 12]에 따라 표시한다.  
 도안색상 : (안전인증) 금색 또는 검은색 / (안전확인) 남색 또는 검은색 /  
 (공급자적합성확인) 남색 또는 검은색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어린이제품 주의·경고 표시

|                    |             |                           |
|--------------------|-------------|---------------------------|
|                    |             |                           |
| <b>주 의</b>         | <b>경 고</b>  | <b>경 고</b>                |
|                    |             |                           |
| 보호자와 함께<br>사용하십시오. | 3세 이하 사용 금지 | 3세 이하 사용 금지<br>입에 넣지 마시오. |

### 2. 어린이제품 품목별 안전기준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속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별표 2], [별표 3]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각종 표시사항(제조년월, 제조국 등),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설명서 등을 기재한다.

예시)

|         |                                                   |                   |                |
|---------|---------------------------------------------------|-------------------|----------------|
| 제 품 명   | 유아용 침대                                            |                   |                |
| 모 델 명   | KPSA-1100                                         | 제 조 연 월           | 2021년 11월      |
| 제 조 자 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 입 자 명           | (수입제품인 경우에 한함) |
|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                   |                |
| 전 화 번 호 | 02-000-0000                                       | 제 조 국 명           | (수입제품인 경우에 한함) |
| 사용연령    | 6개월 이하                                            | 체 중 범 위<br>(한계체중) | 9kg 이하         |
| 경 고 표 시 | “경고! 유아가 앉거나 무릎을 구부리거나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때에는 사용하지 말 것” |                   |                |

## ① 제품 및 포장에 표시하는 시기

국내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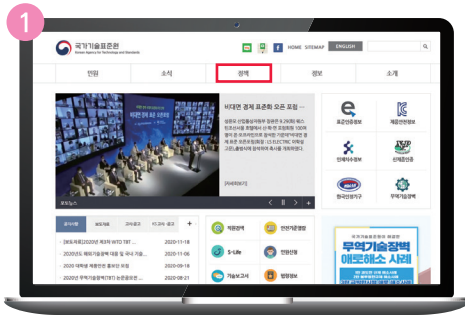
제품 출고 전 표시

수입제품

제품 통관 전 표시

## ① 안전기준 열람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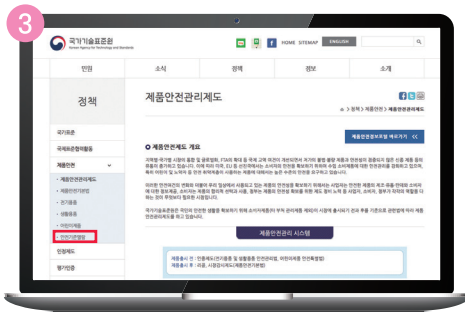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 정책 → 제품안전 → 안전기준 열람 → 품목별 안전기준 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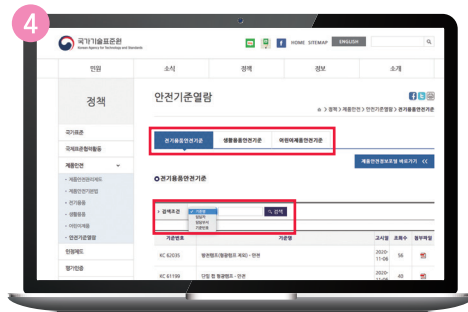
국가기술표준원 → 정책



정책 → 제품안전



제품안전 → 안전기준 열람



안전기준 열람 → 품목별 안전기준 다운로드



## ① 제품 표시사항 위반 시 처분사항

KC표시(KC마크 및 인증, 확인신고번호), 제조국, 제조년월 등의 제품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표시 등이 적발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품 개선조치 권고 처분 뿐 아니라 형사고발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복 위반 시에는 안전인증취소 등의 처분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1. 개선조치 권고

- 제품 표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및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9조(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권고)에 따라 개선조치 권고 대상이 되며, 재고제품이나 향후 수입·제조하여 출고할 제품에 대해 개선을 완료한 후 국표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새로이 출고가 가능합니다.
- ※ 개선조치 권고 이후 개선조치 권고 계획서를 미제출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제품안전기본법 제27조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 2. 형사고발 및 과태료

- 어린이제품에 KC표시 임의변경, 제거, 허위표시, 미표시 등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품목 구분                  | 처벌기준                                            | 관련법                       |
|------------------------|-------------------------------------------------|---------------------------|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KC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10호, 제19호, 제21호 |
|                        | 안전인증, 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않은 제품에 KC표시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9호, 제18호, 제20호  |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KC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한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4호, 제5호, 제6호    |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KC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3항제11호, 제17호, 제20호 |
|                        | 어린이제품 주의·경고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3항제12호, 제18호, 제21호 |

### 3. 인증취소 등(안전인증대상인 경우에 한함)

- 제품 표시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안전인증의 취소) 및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최초 위반 시 개선명령, 2회 위반 시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3회 위반 시 인증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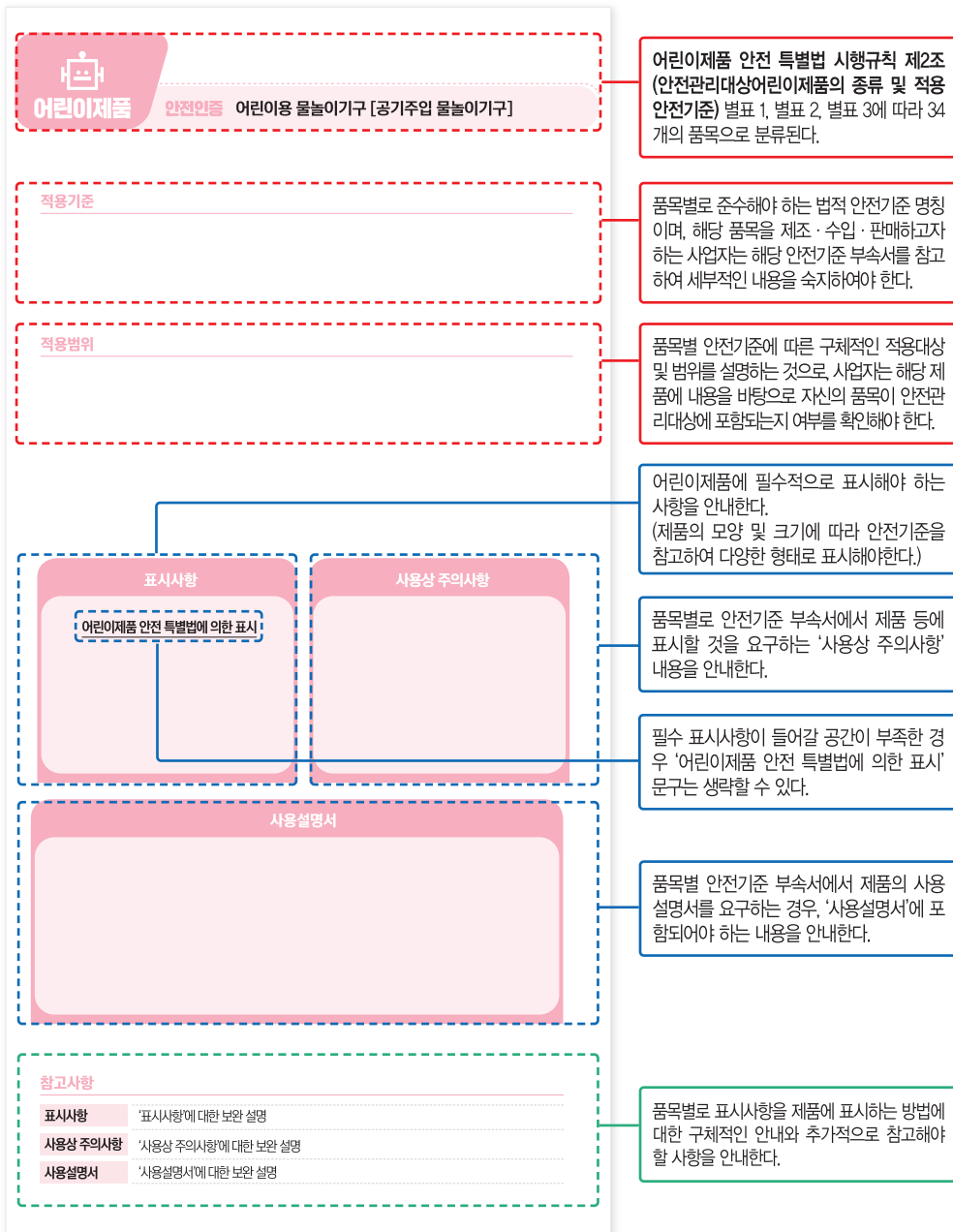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처분기준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또는 공정심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       |               |       |
| 국가기술표준위원장이 고시하는 경미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 법 제21조제1항제2호 | 개선명령  |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 인증취소  |

# 제품안전관리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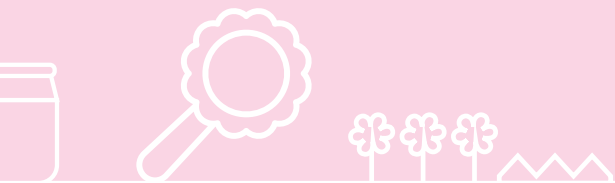
## ❶ 참고사항

다음 장의 품목별 표시사항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있으며, 가이드북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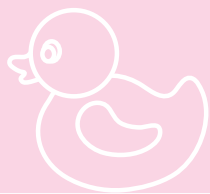






## 2

### 품목별 표시사항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 수영보조용품(착용형)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 수영보조용품(비착용형)  
어린이용 놀이기구 / 그네  
어린이용 놀이기구 / 미끄럼틀  
어린이용 놀이기구 / 공중 놀이기구  
어린이용 놀이기구 / 회전 놀이기구  
어린이용 놀이기구 / 흔들 놀이기구  
어린이용 놀이기구 / 스페이스 넷  
어린이용 놀이기구 / 패쇄형 놀이기구  
어린이용 놀이기구 / 충격흡수표면구역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 어린이용 비비탄총



## 어린이제품

## 안전인증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 적용기준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1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제1부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 적용범위

공기주입 물놀이기구에 적용한다.

**비고:** 공기주입식 물놀이기구란 플라스틱을 주재료로 사용한 공기실이 있고, 공기에 의하여 팽창되면 형상과 부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주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할 때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에어매트리스, 에어베개, 편치볼, 비치볼과 같이 물에서 사용할 우려가 있는 제품도 검사대상에 포함된다.

### 표시사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연령 및 체중범위

**“경고! 본 제품은 어린이가 입에 넣으면 몸에 해로울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

### 사용상 주의사항

1. 구멍기구가 아니라는 표시와 수영장이나 풀장 등 안전한 곳에서만 사용하십시오.
2. 어린이 혼자서는 위험하니 반드시 보호자와 같이 사용하십시오.
3. 공기를 과하게 넣는 것은 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공기를 과하게 넣지 마시오.
4. 몹시 더운 때는 선체가 무르게 될 때가 있지만 공기의 추가 주입을 하지 마시오.
5. 금지사항 뾰족한 바위, 뾰족한 자갈, 철조망 등 예리한 물질과의 접촉은 피하고 화기를 가까이 하지 마시오. 급류의 하천이나 추운 때의 사용, 고압펌프의 사용상의 주의와 함께 보관상의 주의를 명기할 것.
6. 공기주입 후 공기누설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7. 기타 안전한 사용에 관한 주의, 경고

### 참고사항

####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주요 사항 : 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명 및 수입자, 제조국명, 사용연령 및 체중범위

#### 사용상 주의사항

- 다만, 사용 재료명, 치수(mm) 내경 × 외경,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 이외의 한글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 표시할 수 있으며, 사용설명서에는 올바르게 안전한 제품 사용 및 유지보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사용설명서의 발간일자 기타 환경 및 자원의 보존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 어린이제품

## 안전인증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 수영보조용품(착용형)

### 적용기준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1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제2부 수영보조용품(착용형)

### 적용범위

착용형 수영보조용품에 적용한다.

**비고** : 수영보조용품이란 수영을 배울 때 사용자의 부양을 도와 물에 익숙해지게 하거나 수영동작을 배우는데 도움을 주도록 고안된 기구를 말한다. 즉, 수영보조용품은 수영장과 같은 물의 흐름이 없는 장소에서 보호자의 감독 하에 사용하여야 하는 제품으로, 물에서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스포츠용 구명복과 다르다. 또한, 단순히 물놀이에만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공기주입식 물놀이기구와 다르다.

착용형 수영보조용품은 사용자가 처음 수영을 배울 때 물에 익숙해지게 하거나 수영동작을 배우는데 도움을 주도록 고안된 것으로 고체식과 팽창식 모두를 포함한다.

### 표시사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연령 및 체중범위

**경고**  
 “익사 방지의 기능은 없음”  
 “적절한 감시 하에서만 사용하십시오”  
 “물에 정상적으로 착용하십시오”  
 “팔의 위쪽에만 착용하십시오”  
 (팔에 착용하는 기구에만 적용됨)

**“경고! 본 제품은 어린이가 입에 넣으면 물에 해로울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

### 사용상 주의사항

1. 공기를 주입하는 수영보조용품에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공기를 제거하는 방법, 잠금장치의 사용법
2. 수영보조용품을 사용하는 기능에 따라 착용하고 벗는 방법
3. 보관 및 사후관리 절차
4. 사용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설명
5. 정보 및 경고사항  
정보사항 및 경고 사항의 표시 크기는 10 cm × 5 cm 이상의 크기로 한다.  
글자의 크기는 1.5 mm 이상이어야 하며 “경고” 라는 글자는 크기가 5 mm 이상이어야 한다.

| 수영강습을 위한<br>수영보조용품     | 타입  | 체중 Kg |       |       |      |
|------------------------|-----|-------|-------|-------|------|
|                        |     | 15미만  | 15~25 | 25~50 | 50초과 |
| 물놀이에 친숙해지는<br>기구(착용용형) | A*  |       |       |       |      |
| 수영 동작을 배우는<br>기구(착용용형) | B** |       |       |       |      |

**경고: 익사 방지의 기능은 없음**  
**적절한 감시 하에서만 사용할 것**

\*A 타입 : 착용자에 부력을 제공하여 물에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기구를 말한다.

\*\*B 타입 : 착용자가 수영동작을 할 수 있게 하는 기구를 말한다.  
 ※ 기구의 크기 및 타입은 정보사항이 인쇄된 빈칸 중 해당칸을 선택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식별되도록 한다.

### 참고사항

#### 표시사항

- 각 제품에는 표시라벨이 있어야 하고, 한글로 기록되어야 하며, 모든 수영보조용품 표면에 표시되어야 한다.
- 공기를 넣은 보조용품의 경우 공기 주입 밸브로부터 100 mm 이내의 거리에 경고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경고”라는 제목은 길이가 5 mm 이상인 큰 문자로 인쇄하거나 양각으로 새겨넣어야 하며 글자의 크기는 3 mm 이상이어야 한다. 색상은 선택가능하나 바탕색과 대칭되는 색상으로 하거나 튀어나온 형태로 인쇄하여 식별이 잘 되도록 해야 한다.

#### 사용상 주의사항

- 포장 상자 또는 동봉하는 설명서에 포함



## 어린이제품

## 안전인증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 수영보조용품(비착용형)

### 적용기준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1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제2부 수영보조용품(비착용형)

### 적용범위

비착용형 수영보조용품에 적용한다.

**비고** : 수영보조용품이란 수영을 배울 때 사용자의 부양을 도와 물에 익숙해지게 하거나 수영동작을 배우는데 도움을 주도록 고안된 기구를 말한다. 즉, 수영보조용품은 수영장과 같은 물의 흐름이 없는 장소에서 보호자의 감독 하에 사용하여야 하는 제품으로, 물에서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스포츠용 구명복과 다르다. 또한, 단순히 물놀이에만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공기주입식 물놀이기구와 다르다.

비착용형 수영보조용품은 수영동작의 특정부분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된 것으로 고체식과 팽창식 모두를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손으로 잡거나 몸이나 다리 사이에 끼워서 사용한다.

### 표시사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연령

#### 경고

“익사 방지의 기능은 없음”

“적절한 감시 하에서만 사용하십시오”

“경고! 본 제품은 어린이가 입에 넣으면 물에 해로울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

### 사용상 주의사항

1. 공기를 주입하는 수영보조용품에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공기를 제거하는 방법, 잠금장치의 사용법
2. 보관 및 사후관리 절차
3. 보조용품의 특별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한 수영보조용품의 자세한 사용방법
4. 정보 및 경고사항

정보사항 및 경고 사항의 표시 크기는 10 cm × 5 cm 이상의 크기로 한다.

글자의 크기는 1.5 mm 이상이어야 하며 “경고” 라는 글자는 크기가 5 mm 이상 이어야 한다.

수영강습을 위한 수영보조용품 : C타입\*

수영동작의 일부를 향상시키는 용도이며 휴대용임

경고 : 익사방지의 기능은 없음

적절하고 계속 감시하는 상태에만 사용 가능

\*C 타입: 손으로 잡거나 몸 또는 다리사이에 끼워 넣어 사용하며 수영동작의 특정부분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된 것을 말한다.

### 참고사항

#### 표시사항

- 각 제품에는 표시라벨이 있어야 하고, 한글로 기록되어야 하며, 모든 수영보조용품 표면에 표시되어야 한다.
- 공기를 넣은 보조용품의 경우 공기 주입 밸브로부터 100 mm 이내의 거리에 경고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경고”라는 제목은 길이가 5 mm 이상인 큰 문자로 인쇄하거나 양각으로 새겨 넣어야 하며 글자의 크기는 3 mm 이상이어야 한다. 색상은 선택가능하나 바탕색과 대칭되는 색상으로 하거나 튀어나온 형태로 인쇄하여 식별이 잘 되도록 해야 한다.

#### 사용상 주의사항

- 포장 상자 또는 동봉하는 설명서에 포함



## 어린이제품

## 안전인증 어린이용 놀이기구 / 그네

### 적용기준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2 어린이용 놀이기구 제2부 그네

### 적용범위

축을 중심으로 유연성 있는 구성체(체인, 로프)를 사용한 연결부 아래에 사용자의 무게를 지지하여 한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다 방향으로 움직이는 기구에 적용한다.

**비고**: 단일 회전축에 연결된 그네(제1형), 다 회전축에 연결된 그네(제2형), 단일 지점 매달림 그네(제3형), 연결 그네(제4형)로 분류된다.

**비고**: 어린이 놀이기구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하는 것으로 신체 발달,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또는 그 조합물'을 말한다.

### 표시사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연령
- 한계체중

### 사용상 주의사항

1. 출서서 기다렸다가 순서대로 바꿔 한사람씩 탄다.
2. 그네가 완전히 정지한 상태에서 타고 내린다.
3. 그네의 한 가운데에 앉아서 탄다.
4. 손잡이를 양손으로 꼭 잡는다
5. 서서 타거나 무릎으로 혹은 엎드려 타지 않는다
6. 사람이 타지 않는 그네를 흔들거나 줄을 꼬지 않는다.
7. 움직이는 그네와 떨어져서 안전선 밖으로만 다닌다.
8. 그네를 타지 않는 아이들은 그네 가까이에서 다른 놀이를 하지 않는다.

### 참고사항

#### 표시사항

- 그네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 사용상 주의사항

- 제품에는 사용 중에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문자, 기호, 그림 등으로 사용연령 범위, 사용 인원 등 사용상 어린이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에는 안전수칙(사용상 주의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어린이제품

## 안전인증 어린이용 놀이기구 / 미끄럼틀

### 적용기준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2 어린이용 놀이기구 제3부 미끄럼틀

### 적용범위

사용자가 규정된 트랙 내에서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도록 고안된 경사면을 가진 구조물에 적용한다.

**비고** : 웨ιβ 미끄럼틀, 독 미끄럼틀, 연결(부착) 미끄럼틀, 나선형 미끄럼틀, 곡선형 미끄럼틀, 독립 미끄럼틀, 터널 미끄럼틀, 복합 터널 미끄럼틀, 다수 트랙 미끄럼틀로 분류된다.

**비고** : 어린이 놀이기구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하는 것으로 신체 발달,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또는 그 조합물'을 말한다.

### 표시사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연령
- 한계체중

### 사용상 주의사항

1. 미끄럼틀에 오를 시 계단을 이용하여 한사람씩 손잡이를 잡고 한 계단씩 차례차례 올라간다.
2. 한 사람씩 앉아서 내려온다.
3. 내려오기 전에 앞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내려온다.
4. 엎드려 타거나 서서 타지 않는다.
5. 다른 사람을 밀거나 당기지 않는다.
6. 미끄럼틀 사용 시 끈이 달린 옷이나 줄넘기 등 질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몸에 지니지 않는다.

### 참고사항

#### 표시사항

- 미끄럼틀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 사용상 주의사항

- 제품에는 사용 중에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문자, 기호, 그림 등으로 사용연령 범위, 사용 인원 등 사용상 어린이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에는 안전수칙(사용상 주의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어린이제품

## 안전인증 어린이용 놀이기구 / 공중 놀이기구

### 적용기준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2 어린이용 놀이기구 제4부 공중 놀이기구

### 적용범위

어린이가 중력에 의해 케이블을 따라 또는 케이블을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기구의 일종에 적용한다.

**비고** : 매달림형 공중 놀이기구, 좌석형 공중 놀이기구로 분류된다.

**비고** : 어린이 놀이기구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하는 것으로 신체 발달,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또는 그 조합물'을 말한다.

### 표시사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연령
- 한계체중

### 사용상 주의사항

1. 매달림형이나 좌석형과 같이 형식에 맞는 방법으로 탈 것
2. 손잡이나 좌석에는 한 사람만 사용할 것
3. 이동구역에서 머물러 있거나 장난치지 말 것

### 참고사항

#### 표시사항

- 공중 놀이기구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 사용상 주의사항

- 제품에는 사용 중에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문자, 기호, 그림 등으로 사용연령 범위, 사용 인원 등 사용상 어린이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에는 안전수칙(사용상 주의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어린이제품

## 안전인증 어린이용 놀이기구 / 회전 놀이기구

### 적용기준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2 어린이용 놀이기구 제5부 회전 놀이기구

### 적용범위

한 명 이상의 사용자를 위해 진동 없이 수직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도록 만든 놀이기구에 적용한다.

**비고 :** 회전 놀이기구 A형(회전의자), B형 회전 놀이기구(전형적인 회전 놀이기구), C형 회전 놀이기구(회전하는 버섯형, 공중 글라이드), D형 회전 놀이기구(트랙을 따라 도는 형), E형 놀이기구(거대 회전 원반형)으로 분류된다.

**비고 :** 어린이 놀이기구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하는 것으로 신체 발달,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또는 그 조합물'을 말한다.

### 표시사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연령
- 한계체중

### 사용상 주의사항

1. 회전 기구 주변에서 서성이지 마시오
2. 장시간 사용하지 마시오
3. 사용인원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말 것
4. 어린이 이외의 사용자가 과도한 힘으로 회전시키지 말 것

### 참고사항

#### 표시사항

- 회전 놀이기구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 사용상 주의사항

- 제품에는 사용 중에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문자, 기호, 그림 등으로 사용연령 범위, 사용 인원 등 사용상 어린이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에는 안전수칙(사용상 주의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어린이제품

## 안전인증 어린이용 놀이기구 / 흔들 놀이기구

### 적용기준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2 어린이용 놀이기구 제6부 흔들 놀이기구

### 적용범위

사용자에 의해 움직임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단단한 구성체가 중심부를 지지하는 특징을 가진 기구에 적용한다.

**비고** : 축 시소(1형), 단일 지점 시소·흔들 놀이기구(2A형, 2B형), 다 지점 시소/흔들 놀이기구(3A형, 3B형), 흔들림 시소(4형), 사용자 위치 상부에서 지지된 흔들림 시소(5형), 하늘 시소(6형)로 분류된다.

**비고** : 어린이 놀이기구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하는 것으로 신체 발달,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또는 그 조합물'을 말한다.

### 표시사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연령
- 한계체중

### 사용상 주의사항

1. 서로 마주보고 앉는다.(서로 등을 대고 앉지 않는다.)
2. 시소 위에 서 있거나 뛰지 않는다.
3. 두 손으로 손잡이를 꼭 잡는다.
4. 내릴 때는 상대방에게 미리 알린다.
5. 내릴 때는 시소 밑에 발을 두지 않는다.

### 참고사항

#### 표시사항

- 공중 놀이기구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 사용상 주의사항

- 제품에는 사용 중에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문자, 기호, 그림 등으로 사용연령 범위, 사용 인원 등 사용상 어린이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에는 안전수칙(사용상 주의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어린이제품

## 안전인증 어린이용 놀이기구 / 스페이스 네트

### 적용기준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2 어린이용 놀이기구 제7부 스페이스 네트

### 적용범위

유연한 요소(예, 로프, 체인 등)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기하학적 3차원 등반 구조물에 적용한다.

**비고** : 스페이스 네트와 3차원적으로 배열된 평면 네트로 분류된다.

**비고** : 어린이 놀이기구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하는 것으로 신체 발달,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또는 그 조합물'을 말한다.

### 표시사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연령
- 한계체중

### 사용상 주의사항

1. 사용인원을 초과하여 이용하지 않는다.
2. 네트를 꼭 잡고 이동한다.
3. 네트 위에서 상대방을 잡거나 밀지 않는다.

### 참고사항

#### 표시사항

- 스페이스 네트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 사용상 주의사항

- 제품에는 사용 중에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문자, 기호, 그림 등으로 사용연령 범위, 사용 인원 등 사용상 어린이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에는 안전수칙(사용상 주의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어린이제품

## 안전인증 어린이용 놀이기구 / 폐쇄형 놀이기구

### 적용기준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2 어린이용 놀이기구 제8부 폐쇄형 놀이기구

### 적용범위

지정출입구가 있는 3차원 폐쇄 형태로 어린이가 그 안에서 놀 수 있도록 구성된 놀이기구 및 그 구조물(놀이기구 및 구조물은 구성품과 구조 요소를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비고:** 폐쇄형 놀이기구는 낙하미끄럼틀, 오버헤드 트랙(단단한 구성체) 라이너, 도착지점 및 출발지점, 이동지역, 오버헤드 트랙, 주행기, 연결요소, 멈춤장치, 볼풀, 대피로, 대피용 미끄럼틀로 구성된다.

**비고:** 어린이 놀이기구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하는 것으로 신체 발달,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또는 그 조합물'을 말한다.

### 표시사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연령
- 한계체중

### 사용상 주의사항

1. 사용인원을 초과하여 이용하지 말 것
2. 오버헤드 트랙라이더는 한 사람씩 차례로 이용한다.
3. 기구 내에서 놀이 이외의 행위를 하지 말 것(수면, 게임 등)

### 참고사항

#### 표시사항

- 폐쇄형 놀이기구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 사용상 주의사항

- 제품에는 사용 중에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문자, 기호, 그림 등으로 사용연령 범위, 사용 인원 등 사용상 어린이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에는 안전수칙(사용상 주의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어린이제품

## 안전인증 어린이용 놀이기구 / 충격흡수표면구역

### 적용기준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2 어린이용 놀이기구 제9부 충격흡수표면구역

### 적용범위

놀이터 표면의 충격감소 효과를 위한 충격흡수표면재에 적용한다.

**비고** : 어린이 놀이기구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하는 것으로 신체 발달,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또는 그 조합물'을 말한다.

### 표시사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연령
- 한계체중

### 사용상 주의사항

- 충격흡수표면재의 관리방법 및 적절한 이용수칙 등

### 참고사항

#### 표시사항

- 충격흡수표면재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 사용상 주의사항

- 제품에는 사용 중에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문자, 기호, 그림 등으로 사용연령 범위, 사용 인원 등 사용상 어린이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에는 안전수칙(사용상 주의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제품에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다.



## 어린이제품

## 안전인증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 적용기준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3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 적용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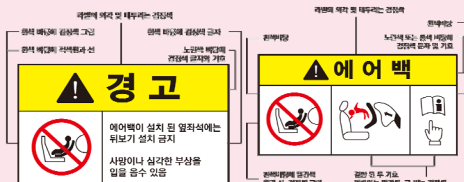
자동차의 주·정차, 운행 중의 급정거 또는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 승차하고 있는 어린이를 보호하거나 상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어린이를 앉히거나 눕어서 구속하거나 위치를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치에 적용한다.

### 표시사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



- 종류 : 유아용 좌석
- 사용 가능한 어린이의 체중 범위 : 9 이상~18 kg 이하
- 사용범주 및 구속방법
  - 사용범주 : 범용, 준범용, 특정 자동차용 등
  - 구속방법 : 차량용 안전벨트, ISOFIX 전용, ISOFIX + 차량용 안전벨트, Latch형과 자동차용 안전벨트 겸용 등
- 구속 형태 : 앞보기 및 뒤보기 겸용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연령
- 앞보기와 뒤보기 형태로 설치 시 안전벨트가 통과하는 위치가 다른 경우 색깔로 구분하여 분명하게 구별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색깔로 구분 시 앞보기는 적색으로 뒤보기는 청색으로 구분하고 쉽게 바라거나 변색되어서는 안된다.
- 뒤보기 장치의 경우 그림과 같은 경고 표시(둘 중 하나)를 어린이 머리 부분의 잘 보이는 위치에 영구적으로 하여야 한다. 라벨의 최소 크기는 (60 × 120) mm 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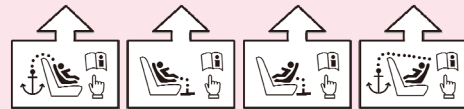


### 표시사항

- ISOFIX고정 시스템을 가진 보호장치는 설치하는 사람이 다음의 정보를 영구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ISOFIX 기호는 지름 13 mm 이상의 원형이어야 한다.



- 정보는 기호 그리고/또는 글로 전달될 수 있다.
  - a) 보호장치를 설치를 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적절한 단계. 예를 들어 ISOFIX 연결부를 밖으로 꺼내는 방법이 설명되어야 한다.
  - b) 표시장치의 위치, 기능 및 해석에 대한 설명
  - c) 필요한 경우 보호장치의 회전을 제한하기 위한 방법인 상부 밧줄 끈의 경로와 위치 또는 다른 장치의 설치에 필요한 행동을 다음의 기호 중 적절한 하나를 나타내어야 한다.



- d) 보호장치의 회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부 밧줄 끈 및 비강체 연결부의 조절 방법에 대한 설명
- e) 표시는 보호장치를 설치하는 사람에게 보여야 하며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f) 필요한 경우 아래 기호를 사용하여 보호장치 사용자에게 지시사항과 해당 문서의 위치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사용상 주의사항

1. 본 장치를 제조자가 제시한 설명서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벨트 또는 ISOFIX 장치 또는 Latch형 고정장치로 단단히 고정 할 것
2. 보조벨트가 있는 경우 다음의 주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보호장치는 보조 벨트만으로 고정시키지 않을 것”**
3. 앞보기와 뒤보기 겸용 보호장치의 경우 다음의 주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어린이가 허용된 몸무게를 초과하기 전에는 앞보기로 사용하지 말 것.”**
4. 보호장치의 의도된 그룹에 적합한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할 것
5. 보호장치에 탑승한 어린이를 하네스 벨트 등으로 구속할 것
6. 보호장치에 탑승한 어린이를 차량에 혼자 내버려 두지 말 것
7. 그 밖에 필요사항  
 보기 뒤보기 보호장치의 경우, 에어백이 있는 앞좌석에 설치하지 말 것!

## 사용 설명서

### 1. 위험방지 표시

**보기 1** 보호장치에는 어린이가 없더라도 보호장치는 차량에 단단히 고정되어야 한다. 만약 고정하지 않으면 충돌사고 시 보호장치가 튀어나가 동승자에게 상해를 줄 우려가 있음

**보기 2** 휴대용 유아침대는 어린이의 머리가 차의 옆 유리창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가능한 자동차의 중간지점에 설치할 것

**보기 3** 보호장치가 앞보기와 뒤보기 겸용일 경우, 에어백이 있는 앞좌석에는 뒤보기로 설치하지 않을 것. 단, 스위치를 작동시켜 에어백의 작동 상태를 조절 가능한 경우, 에어백 작동을 끈 상태로 앞좌석에 뒤보기로 설치할 수 있다. 이때 보호자는 차량 운행전 에어백의 스위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보관방법

### 3. 교환 시기

## 참고사항

### 표시사항

- 제품 및 포장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 사용상 주의사항

- 사용상 주의사항은 보호장치에 탑승하는 어린이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 사용 설명서

- 사용 설명서에는 위험방지표시, 보관방법, 교환시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 어린이제품

## 안전인증 어린이용 비비탄총 / 어린이용 비비탄총

### 적용기준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4 어린이용 비비탄총

### 적용범위

압축공기나 스프링 등의 압축된 동력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고형 탄환을 운동에너지로 비행시킬 수 있는 만 8세 이상부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장난감 총에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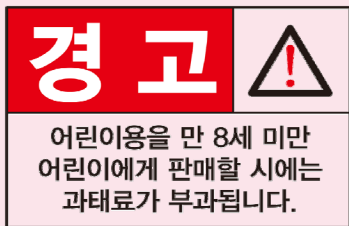
### 표시사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

- 모델명 : KPSA-1100
- 사용연령 : 만 8세 이상 만 13세 이하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상 주의사항

1. 얼굴과 머리를 향하여 쏘면 눈이나 귀에 맞을 우려가 높으므로 절대로 얼굴을 향해 쏘면 안 됩니다.
  2. 눈이나 귀 옆에서 쏘면 안 됩니다.
  3. 비비탄이 눈에 맞으면 눈이 멀게 될 수 있습니다.
  4. 반드시 보안경을 쓰고 사용해야 합니다.
  5. 비비탄을 더 세게 나가게 하기 위하여 구조를 바꾸거나 개조해서는 안 됩니다.
  6. 제조자가 공급하거나 추천한 비비탄 이외의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 ※ 판매자는 판매할 때에 상기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어린이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 ※ 사용하는 어린이의 보호자는 상기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어린이에게 반드시 알리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사용설명서

사용설명서에는 사용연령층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구로 사용상 주의사항과 그 외 사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참고사항

#### 표시사항

- 제품 날개 표면에는 제조(수입)자명 또는 그 약호 및 15포인트 이상 크기의 제품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만 8세 미만은 사용할 수 없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 단위 포장에는 소비자 눈에 가장 띄기 쉬운 윗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한글로 표시하되, 사용연령은 15포인트 이상의 글자크기로 주위글씨 등과 쉽게 구별되어 보이는 방법(예 : 노란 바탕에 빨간 글씨, 음·양각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경 의무착용 관련 문구는 다른 문구보다 최소 50 % 이상 더 크게 표시하여야 한다.







#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유아용 섬유제품 /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 어린이용 침대가드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 유아용 노리개젓꼭지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 유아용 노리개젓꼭지 걸이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 바닥매트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 보호장구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어린이용 이단침대 / 어린이용 이단침대  
완구 / 완구  
유아용 삼륜차 /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 유아용 높은 의자  
유아용 의자 / 유아용 부스터 의자  
유아용 의자 / 유아용 테이블부착식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 학용품  
보행기 / 보행기  
유모차 / 유모차  
유아용 침대 / 기울어진 요람 및 간이침대  
유아용 침대 / 가정용 유아용 침대 및 요람  
유아용 침대 / 가정용 유아용침대 및 접이침대  
유아용 침대 / 가정용 놀이 울타리  
어린이용 온열팩 /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 프레임 없는 캐리어  
유아용 캐리어 / 프레임 있는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 구명복 / 스포츠용 구명복  
어린이용 스포츠 구명복 / 부력 보조복



## 어린이제품

## 안전확인 유아용 섬유제품 / 유아용 섬유제품

### 적용기준

안전확인기준 부속서 1 유아용 섬유제품

### 적용범위

36개월 미만의 영·유아용 섬유제품에 대해 규정한다. 다만, 맞춤복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에서 제외하며 놀이에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가장복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완구)**의 안전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품의 세부분류는 안전확인기준 부속서 1의 3항을 참고한다.

### 표시사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

1. 의류(의의류, 중의류, 내의류, 한복 등)
  -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겉감, 안감, 충전재(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에 한 한다), 다운제품은 솜털(다운), 깃털(페더), 기타로 구분하여 %로 표시
  -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제조연월, 최초판매시즌, 로트번호** 등의 어느 하나를 표시
  - **치수**
  - **사용연령**
  -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취급상 주의사항**
2. 의류 이외의 섬유제품(이불 및 요, 침낭, 카펫, 쿠션류, 신발류, 솜, 가방 등)
  -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겉감, 안감, 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은 충전재 병기, 다운제품은 솜털(다운), 깃털(페더), 기타로 구분하여 %로 표시
  -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제조연월, 최초판매시즌, 로트번호** 등의 어느 하나를 표시
  - **치수**(솜, 가방, 커튼 등 일부 제품은 생략)
  - **사용연령**
  -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취급상 주의사항**

### 사용상 주의사항

1. 취급상 주의 표시
  - 1) 물세탁 방법
  - 2) 산소 또는 염소표백의 거부
  - 3) 다림질 방법
  - 4) 드라이클리닝
  - 5) 짜는 방법
  - 6) 건조방법
2. 기타 취급상 주의·경고 문구
  - 1) 녹 및 피부 접촉 주의사항
  - 2) 불꽃주의
  - 3) 아동이 입을 수 있는 섬유제품의 작은 부분에 대한 주의사항  
“주의! 작은 부품이 탈락되면 삼킬 수 있음”
  - 4) 아동이 사용하는 연질 또는 발포된 합성수지 재질의 신발에 대한 주의사항  
“주의! 신발이 에스컬레이터 등에 깔 수 있음”



## 참고사항

|          |                                                                                                                                                                                                                                                                                                                                                                                                                                                                                                                                                                                                                                                                                                                                                                                                                                                                                                                             |
|----------|-----------------------------------------------------------------------------------------------------------------------------------------------------------------------------------------------------------------------------------------------------------------------------------------------------------------------------------------------------------------------------------------------------------------------------------------------------------------------------------------------------------------------------------------------------------------------------------------------------------------------------------------------------------------------------------------------------------------------------------------------------------------------------------------------------------------------------------------------------------------------------------------------------------------------------|
| 표시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제품에는 세탁을 하더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박음질 또는 그와 동등한 효과의 방법으로 공통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다만 '표시자' 표시는 제품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품문의처', '소비자상담실', '제조자명(국산품에 한함)', '수입자명', '판매자명'으로 표시할 수 있음. 또한 치수는 표시할 것을 권장함.</li> <li>• 개별제품에는 제품의 추적이 가능한 제조연월, 최초 판매시즌, 로트번호, 제품의 스타일번호, 바코드 번호, QR코드 등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여 동제품이 언제 만들어 졌는지 객관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피부 접촉이 일시적인 타올 및 직접 착용하지 않은 가방, 방석류, 모기장, 덮개, 수의 등은 자체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번호를 관리하고 제품에 직접 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li> <li>• 개별제품의 박음질 표시가 제품의 사용에 불편을 주거나 미관을 심히 해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류, 런닝셔츠, 팬티류, 양말류, 장갑류, 수영복, 체조복, 스카프, 머플러, 손수건, 가발류, 모자, 기저귀류, 신발, 수의류, 타올, 넥타이, 모기장, 덮개류, 턱받이류는 개별제품의 포장, 꼬리표 또는 스티커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침낭 및 카페트는 방염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박음질 또는 그와 동등한 효과의 방법으로 개별제품의 표시한 경우도 소비자가 포장을 개봉하지 않고 확인할 수 없는 개별제품의 표시도 포장 또는 꼬리표, 스티커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li> <li>• 동일 품명으로 2개 이상(상하의 경우는 제외)의 개수로 모아서 포장된 상태로 판매할 경우는 최소 판매 포장 단위 표면에 표시할 수 있다.</li> </ul> |
| 사용상 주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상 주의사항은 부속서 1 [별표 8]에 따라 제품에 적합한 내용을 물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방법 등을 포함해 4 종류 이상을 한글 또는 기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기호는 KS K 0021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류, 손수건, 타올, 모기장, 덮개류, 가방 등은 취급상 주의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li> <li>• 금속 액세서리를 사용한 제품에는 부속서 1 [별표 8](7)에 따라 녹 및 피부 접촉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li> <li>• 불꽃 접근시 제품에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속서 1 [별표 8](8) "불꽃주의"의 기호를 추가할 수 있다.</li> <li>• 유아 또는 아동이 입을 수 있는 섬유제품이 안전확인 부속서36 제2부4.2시험(작은 부품시험)에서 통과되는 작은 부품이 부착된 경우에는 부속서 1 [별표 8](9)에 따라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li> <li>• 유아 및 아동이 사용하는 연질 또는 발표된 합성수지 재질의 신발은 부속서 1 [별표 8](10)에 따라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li> <li>• 섬유제품의 치수를 표시할 경우는 부속서 1 [별표 9]에 따른다.</li> <li>• 안전요건 적합 표시 안전요건에 적합함을 수요자에게 알리기 위해서 표시사항에 "기준에서 정한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적합한 제품임"의 표시문구를 추가할 수 있다.</li> </ul>                                                                                                                                                  |



## 어린이제품

## 안전확인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 어린이용 침대가드

### 적용기준

안전확인기준 부속서 2 어린이용 침대가드

### 적용범위

일반 가정에서 성인용 침대 및 매트리스와 결합하여, 생후 18개월부터 60개월의 어린이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어린이용 침대 가드에 적용한다.

#### 표시사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

- 모델명 : KPSA-1100
- 사용연령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36개월 이상 어린이용 침대가드 중 작은 부품이 있는 제품

**“경고!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작은 부품을 포함하여 아이가 삼킬 위험이 있음”**

또는



- 질식 및 목졸림 위험



**“경고! 침대가드 내부와 주위에 있는 틈에 어린이가 갇혀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음”**  
**“경고! 생후 18개월 미만의 유아는 침대 가드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음”**

#### 사용상 주의사항

1. 침대 가드가 매트리스에 밀착되지 않아 틈이 생겼거나 머리 판이나 발판으로부터 220 mm 이상의거리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2. 베개, 담요, 또는 기타 질식을 유발할 수 있는 물건으로 틈을 막지 마십시오.
3. 가드부분에 과도한 힘을 가하거나, 흔들지 마십시오.
4. 어린이가 가드에 타지 않도록 하십시오.
5. 보호자의 감독하에 사용하십시오.
6. 반드시 혼자서 침대를 드나들 수 있는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만 사용하십시오.
7. 침대가드의 설치가 적합한 침대에서만 사용하십시오(절대로 유아용, 아동용 침대, 2단 침대, 물침대, 또는 공기 주입식 침대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8. 침대 가드에 고정용 부속품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 설명서의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고정하시기 바랍니다(제대로 고정되지 않을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9. 바닥에서 매트리스 표면까지의 높이가 600 mm 이상의 침대에서는 사용하지 마세요.
10. 침대 가드의 상단에서 매트리스 표면까지 160 mm 미만의 침대는 사용하지 마세요.

#### 사용설명서

1. 사용연령 범위
2. 침대가드에 적합한 매트리스의 최소, 최대 길이 및 최대 두께 명시
3. 조립 및 설치 방법(조립제품에 한함)

### 참고사항

####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 단위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 사용설명서

- 제품 또는 포장 외의 한글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 어린이제품

## 안전확인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 유아용 노리개젓꼭지

### 적용기준

안전확인기준 부속서 2 유아용 노리개젓꼭지

### 적용범위

영양의 공급 없이 영·유아가 빨아들이며 만족하는 용도의 유아용 노리개젓꼭지에 적용한다.

#### 표시사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

- 모델명 : KPSA-1100
- 재질
- 사용연령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경고! 목이 조일 위험이 있으므로 노리개 젓꼭지를 유아의 목에 걸지 말 것"**

#### 사용상 주의사항

1. 손잡이나 고리 등 단단한 부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2. 노리개젓꼭지를 삼킴으로 인한 위험성

### 참고사항

####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 단위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 사용상 주의사항

- 제품 또는 포장 외의 한글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 어린이제품

## 안전확인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 유아용 노리개젓꼭지 걸이

### 적용기준

안전확인기준 부속서 2 유아용 노리개젓꼭지 걸이

### 적용범위

영·유아의 옷 등에 노리개젓꼭지를 고정할 수 있게 하는 유아용 노리개젓꼭지 걸이에 적용한다.

#### 표시사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

- 모델명 : KPSA-1100
- 재질
- 사용연령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경고(노리개젓꼭지 걸이의 포장에 경고표시를 한다.)

“경고! 노리개젓꼭지 걸이의 길이를 절대 늘이지 말 것”  
 “경고! 끈, 리본, 레이스 또는 옷의 헐렁한 부분에 절대 부착하지  
 말 것”

#### 사용상 주의사항

1. 노리개젓꼭지 걸이의 길이를 늘이지 말 것.
2. 끈, 리본, 레이스 또는 옷의 헐렁한 부분에 부착하지 말 것. 유아가 질식 될 수 있음.
3. 유아용 침대 또는 요람에서 노리개젓꼭지 걸이를 사용하지 말 것.
4. 노리개젓꼭지 걸이는 장난감 또는 유아가 깨물고 노는 장난감으로 사용 할 수 없음.

### 참고사항

####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 단위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 사용상 주의사항

- 제품 또는 포장 외의 한글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 어린이제품

## 안전확인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 바닥매트

### 적용기준

안전확인기준 부속서 2 바닥매트

### 적용범위

방 안에서 일정 면적(예: 500 mm × 500 mm)의 바닥 위에 놓고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외장재와 관계없이 내장재가 합성수지인 제품도 적용한다. 단, 야외용으로 의도되었거나, 충격흡수층이 없는 제품은 제외한다. 매트 종류에는 돗자리형, 폴더형, 퍼즐형이 있다.

### 표시사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XX

- 모델명 : KPSA-1100
- 사용연령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경고(36개월 이상 바닥매트 중 작은 부품이 있는 제품)

“경고!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작은 부품을 포함하여 아이가 삼킬 위험이 있음”

또는



“경고! 입에 넣으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

###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제조자가 제시하는  
사용상 주의사항 기재

### 참고사항

####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 단위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 사용상 주의사항

- 제품 또는 포장 외의 한글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 어린이제품

## 안전확인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 보호장구

### 적용기준

안전확인기준 부속서 3 보호장구

### 적용범위

롤러스포츠 보호장구에 적용한다.

보호대란 인라인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자전거 등을 탈 때 넘어지거나 장애물에 부딪히는 사고로 인하여 손, 손목, 팔꿈치, 무릎에 입는 찰과상이나 찢어짐, 골절 등의 상해로부터 보호하거나 상해를 경감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대를 말한다.

### 표시사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

- 모델명 : KPSA-1100
- 사용연령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보호장구의 크기
- 해당되는 보호장구에 대해 왼쪽에 적합한지 오른쪽에 적합한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
- 보호장구에 의해 제공되는 보호의 수준에 대한 설명

### 사용상 주의사항

1. 세탁방법
2. 보관방법
3. 올바른 착용방법
4. 한번이라도 큰 충격을 받은 보호장구는 충격흡수성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겉모양에 손상이 없더라도 사용하지 마시오.

### 참고사항

####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 단위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 사용상 주의사항

- 제품 또는 포장 외의 한글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 어린이제품

## 안전확인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 안전모

### 적용기준

안전확인기준 부속서 3 안전모

### 적용범위

머리에 착용하여 충격에너지를 흡수하여 머리의 상해 위험을 감소시켜주는 안전모에 대하여 적용한다.

#### 표시사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XX

- 모델명 : KPSA-1100
- 사용연령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크기의 호칭
- 투시부의 재질(눈 보호구에 한함)

#### 사용상 주의사항

1. 안전모는 머리에 잘 맞고 올바르게 착용해야만 보호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모든 부품은 사용자에게 알맞게 조정하여 사용하십시오.  
예) 귀를 덮지 않도록 위치한 끈, 턱 바로부터 떨어져 위치한 버클, 편안함과 견고함을 위해 조정된 끈과 버클
3. 안전모는 부상으로부터 항상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어린이를 보살피는 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4. 한번이라도 충격을 받은 안전모는 충격 흡수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으므로 겉모양에 손상이 없더라도 사용하지 마십시오.
5. 안전모 개조 및 변형은 제품 품질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6. "머리상해의 위험과 더불어 질식의 위험요소를 가지는 환경에서 사용되도록 의도된 어린이용 안전모 임"
7. 기타 안전한 사용에 관한 주의, 경고

**"경고" 이 헬멧에는 일어날 수 있는 목졸림 또는 매달림(hanging)을 피하기 위하여 특정 하중조건하에서 해제되도록 디자인 된 자체 해제 유지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음.**  
안전모는 심각한 충격에 벗겨질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 단위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 사용상 주의사항

- 제품 또는 포장 외의 한글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 어린이제품

## 안전확인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 적용기준

안전확인기준 부속서 4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 적용범위

체중이 20 kg 을 초과하는 탑승자 혼자의 힘으로 가속이나 조정을 할 수 있는 두 개의 수레와 바퀴가 있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연결 갑판으로 구성된 스케이트보드에 적용하며, 동력을 이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표시사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

- 모델명 : KPSA-1100
- 사용연령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경고! 체중이 20 kg 미만인 자는 사용하지 말 것”  
 “경고! 다리거나 스케이트보드 위에서 점프하지 말 것”

· 주의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사용할 것”

### 사용상 주의사항

1. 안전보호장구(안전모, 손목·팔꿈치무릎보호대 등)를 착용하고 사용할 것
2. 탑승자와 다른 사람에게 사고의 우려가 있는 포장도로나 차도에서는 타지 말 것
3. 만 8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의 감시 하에서 탈 것
4. 젖었거나 평평하지 않은 표면에서는 타지 말 것
5. 새로운 기술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천천히 배울 것. 스케이트보드에서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균형을 잃었다면 내려와서 다시 시작할 것. 처음에는 안전한 경사에서 타고 그 후에는 넘어지지 않고 보드에서 내릴 수 있는 속도의 경사면에서 탈 것
6. 탑승 중의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골절이므로 처음에는 스케이트보드 없이 떨어지는 착지연습을 할 것
7. 처음 배우는 사람은 친구나 보호자와 함께 탈 것
8. 스케이트보드에서 뛰어 내리기 전에 스케이트보드 진행방향을 인적이 없는 곳으로 설정한 후 뛰어내릴 것
9. 스케이트보드의 구조에 관한 정보
10. 사용자에 대한 지시사항
11. 점검과 유지보수에 대한 지시사항

“경고! 체중이 20 kg 미만인 자는 사용하지 말 것”  
 “경고! 다리거나 스케이트보드 위에서 점프하지 말 것”

### 참고사항

####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 단위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 사용상 주의사항

- 제품 또는 포장 외의 한글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 어린이제품

## 안전확인 어린이용 이단침대 / 어린이용 이단침대

### 적용기준

안전확인기준 부속서 5 어린이용 이단침대

### 적용범위

침대 바닥의 상단 표면이 바닥면에서 800 mm 이상인 침대 또는 그 위에 쌓아 올린 침대로 조립할 수 있는 구성체 세트이며 만 3세 이상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용 이단침대에 적용한다.

#### 표시사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XX

- 모델명 : KPSA-1100
- 사용연령 : 만 3세 이상 만 13세 이하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상 주의사항(제품 본체 부착)

#### 사용상 주의사항

- ⚠ 경고 : 6세 이하의 어린이는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위층에 재우지 마시오.
  - ⚠ 경고 : 정해진 기준의 매트리스를 사용하십시오.
  - ⚠ 경고 : 붕괴의 위험이 있으므로 침대 상단에서 뛰지 말고 2명 이상 올라가지 마시오.
  - ⚠ 경고 : 침대 위층의 난간, 앞판 및 뒤판 등에 걸터앉거나 매달리지 마시오.
  - ⚠ 경고 : 끈류 등 위험한 물건을 부착하지 마시오.
  - ⚠ 경고 : 나사의 풀림상태 및 난간의 부착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십시오.
  - ⚠ 경고 : 착탈식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침대 상단에 올려놓지 마시오.
  - ⚠ 경고 : 3세 이하는 사용하지 마시오.
- 기타 안전한 사용에 관한 주의, 경고

#### 사용설명서

1. 매트리스 상단이 침대에 표시된 선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설명서
2. 조립 설명서
3. 사다리의 배치 및 연결
4. 공급되는 부품목록 및 침대를 조립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구 세목
5. 문구 "상단 침대에서 추락할 수 있는 어린이 (6세 미만)에 대한 위험 인식"
6. 이 기준의 번호
7. 매트리스가 상한을 넘여가지 않도록 표시한 영구적인 선

### 참고사항

- |          |                                                       |
|----------|-------------------------------------------------------|
| 표시사항     | · 제품 또는 최소 단위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
| 사용상 주의사항 | · 제품 또는 포장 외의 한글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
| 사용설명서    | · 모든 2단 침대는 사용설명서가 부착되어야 한다.                          |



## 어린이제품

## 안전확인 완구 / 완구

### 적용기준

안전확인기준 부속서 6 완구

### 적용범위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되었거나, 명백히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에 적용한다.

#### 표시사항(단위 포장)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XX

- 품명
- 모델명 : KPSA-1100
- 사용연령 : 영·유아용 완구 3세 미만 / 어린이용 완구 3세 이상~8세 미만 / 어린이학생용 완구 8세 이상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안전표시(주의·경고 등)
- 크기 및 한계 체중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설명서
- 식품 또는 화장품과 완구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또는 「화장품법」의 규정에 따른 표시와 이 기준에 의한 표시를 각각 하여야 한다.

#### 표시사항(제품 날개)

- 제조(수입)자명 또는 그 약호
- 안전표시(주의·경고 등)
- 지시사항

#### 표시사항(총기류)

- 총신의 총구 끝에 부착된 진한 오렌지색의 마개 또는 좀 더 밝은 오렌지색의 마개. 이 마개는 총신의 총구 끝 부분으로부터 6 mm 이상 오목하게 들어가서는 안된다.
- 총신의 총구 끝 부분에서 최소 6 mm 거리에 총신 원주에 진한 오렌지색의 밴드 또는 좀 더 밝은 오렌지색의 밴드로 덮여야 한다.
- 완구의 전체 외부 표면은 흰색, 밝은 빨강, 밝은 오렌지, 밝은 노랑, 밝은 녹색, 밝은 파랑, 밝은 분홍 또는 밝은 자주색으로 각각 채색되거나 기타 다른 색상이 어떤 유형으로 조합되더라도 두드러지는 색상으로 채색되어야 한다.

#### 사용설명서

사용설명서에는 부속서 6의 5.2 안전표시, 5.3 사용설명서가 표시되어야 한다.

### 참고사항

#### 표시사항

- 단위 포장에는 눈에 가장 띄기 쉬운 전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품의 특성상 제품 날개에 직접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는 제품에 직접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세트품인 경우는 대표되는 세트 1개에만 표시하여도 무방하다.
- 완구 총기류와 실제 총기류 사이의 잠재적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사용 설명서

- 완구의 안전한 사용 또는 조립 방법에 대한 정보 및 지시사항은 그것이 포장에 인쇄되었는지 아니면 날개의 형태로 인쇄되었는지 관계없이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 어린이제품

## 안전확인 유아용 삼륜차 / 유아용 삼륜차

### 적용기준

안전확인기준 부속서 7 유아용 삼륜차

### 적용범위

만6개월부터 주로 5세 이하의 유아가 페달을 발로 돌려서 사용하는 발판식 삼륜차(이하 삼륜차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손의 힘으로 작동하는 삼륜차는 제외한다.

### 표시사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연령
- 한계체중
- 주의사항

### 사용설명서

삼륜차에 첨부하는 취급 설명서에는 조립, 사용방법 및 안전에 관한 주의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 사용상 주의사항

1. 유아들이 작은 부품을 삼키면 질식할 위험이 있습니다.
2. 기타 안전한 사용에 관한 주의, 경고
3. 보호자용 손잡이 봉과 발판은 자기가 스스로 주행할 수 없는 유아를 위한 보조구이며 발이 지면 및 페달에 확실하게 닿아 스스로 주행할 수 있게 되면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의.
4. 보호자용 손잡이 봉의 조작은 반드시 보호자가 하며 유아의 발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의.
5. 유아가 인장에 올라서지 않도록 주의 할 것. 인장에 올라서서 보호자용 손잡이 봉에 기대면 삼륜차 꽤 전도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6.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는 유아용삼륜차에 한하여 경고문구를 적어야 하며, 해당 문구는 연령 경고 표시기호로 대체해도 무방하다.

**“경고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음”**



〈연령 경고 표시기호〉

**“경고! 입에 넣으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

### 참고사항

####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 단위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다만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 외에 한글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로 표시할 수 있으며 가능한 조립요령 및 취급설명서를 별도 첨부해야 한다. 주의사항의 위치, 내용 및 형태를 확실히 눈에 띄게 하여야 한다.

#### 사용상 주의사항

- 주의사항의 위치, 내용 및 형태를 확실히 눈에 띄게 하여야 한다. 특정한 위해 요인의 표시(연령 경고 표시기호 등)는 제품, 포장 또는 지시사항에 표시해야 한다.

#### 사용설명서

- 사용설명서(취급설명서)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어린이제품

## 안전확인 유아용 의자 / 유아용 높은 의자

### 적용기준

안전확인기준 부속서 8 유아용 높은 의자

### 적용범위

6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유아가 식사를 주된 목적으로 사용하며 식탁 높이에 안정적으로 위치하고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된 유아용 높은 의자(이하 의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표시사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



# XXXXXXXXXXXXXX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 (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 (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 (수입품에 한함)
- 사용연령
- 한계제중
- 사용상주의사항

### 사용설명서

#### 1. 경고

“ 경고 : 유아를 혼자 놓아두지 말 것”

#### 2. 주의

- ①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시트나 발걸이 부분에 유아를 세워두지 말 것
- ② 전도의 위험이 있으므로 유아의 몸을 손잡이 너머 앞으로 내밀게 하지 말 것
- ③ 유연한 플라스틱 포장재는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유아의 손이 닿지 않도록 할 것
- ④ 안전장치는 몸에 맞고 바르게 고정시킬 것
- ⑤ 보호자가 조립할 것
- ⑥ 난로, 다리미 등의 위험물 근처, 계단이나 베란다 출입구, 현관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
- ⑦ 유아가 발판을 딛고 의자 아래로 내려오려 하면 보호자가 붙잡을 것
- ⑧ 바퀴가 부착된 제품은 바퀴를 고정하여 사용할 것
- ⑨ 평평한 곳에서 사용할 것
- ⑩ 좌석이나 발판, 등받이, 테이블 등의 구성 요소가 다양한 위치로 조절되거나 배치될 수 있는 형태의 제품은 적절한 조절 및 배치의 방법에 대한 제조자의 설명 등을 참조할 것
- ⑪ 조립하는 제품은 올바르게 안전한 조립을 위하여 사용설명서를 보관할 것

#### 3. 기타

- ① 올바른 사용요령
- ② 올바른 조립 요령(조립 제품에 한함)
- ③ 기타 필요한 사항

### 사용상 주의사항

#### 1. 제품 본체

“ 경고 : 유아를 혼자 놓아두지 말 것”  
 “안전장치는 몸에 맞고 바르게 고정시킬 것”

#### 2. 제품 본체 또는 최소 단위 포장

- ① 경고  
 “ 경고 : 유아를 혼자 놓아두지 말 것”  
 “ 경고 : 입에 넣으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
- ② 주의
  -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시트나 발걸이 부분에 유아를 세워두지 말 것
  - 전도의 위험이 있으므로 유아의 몸을 손잡이 너머 앞으로 내밀게 하지 말 것
  - 유연한 플라스틱 포장재는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유아의 손이 닿지 않도록 할 것
  - 안전장치는 몸에 맞고 바르게 고정시킬 것

### 참고사항

####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 단위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 사용상 주의사항

· 제품최소 단위포장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고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사용설명서

· 별도의 사용설명서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고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어린이제품

## 안전확인 유아용 의자 / 유아용 부스터 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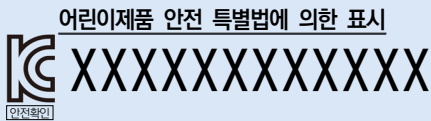
### 적용기준

안전확인기준 부속서 8 유아용 부스터 의자

### 적용범위

6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유아가 식사를 주된 목적으로 사용하며 성인 의자위에 장착하여 식탁 높이에 안정적으로 위치하고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된 유아용 부스터의자(이하 의자라 한다.)의 안전요건과 시험방법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표시사항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연령
- 한계체중
- 사용상주의사항

### 사용상 주의사항

1. 제품 본체
  - “경고 유아를 혼자 놓아두지 말 것”
  - “경고 안전장치는 몸에 맞고 바르게 고정시킬 것”
2. 제품 본체 또는 최소 단위 포장
  - ① 경고
    - “△경고 : 유아를 혼자 놓아두지 말 것”
    - “△경고 : 36개월을 초과하는 유아는 사용하지 말 것”
    - “△경고 : 넘어짐으로 인한 상해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한 성인용 의자에 확실하게 고정할 것”
    - “△경고 : 입에 넣으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
  - ② 주의
    -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시트나 발걸이 부분에 유아를 세워두지 말 것
    - 전도의 위험이 있으므로 유아의 몸을 손잡이 너머 앞으로 내밀게 하지 말 것
    - 유연한 플라스틱 포장재는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유아의 손이 닿지 않도록 할 것
    - 안전장치는 몸에 맞고 바르게 고정시킬 것
    - 부스터 의자는 성인용 의자에 확실하게 고정된 상태에서 사용해야 하며 등받이가 없거나 확실하게 고정하기 어려운 형태 또는 재질의 성인용 의자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 것

### 사용설명서

#### 1. 경고

- “△경고 : 유아를 혼자 놓아두지 말 것”
- “△경고 : 36개월을 초과하는 유아는 사용하지 말 것”
- “△경고 : 넘어짐으로 인한 상해의 위험성이 있으나,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 주의가 필요함”

#### 2. 주의

- ①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시트나 발걸이 부분에 유아를 세워 두지 말 것
- ② 전도의 위험이 있으므로 유아의 몸을 손잡이 너머 앞으로 내밀게 하지 말 것
- ③ 유연한 플라스틱 포장재는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유아의 손이 닿지 않도록 할 것
- ④ 안전장치는 몸에 맞고 바르게 고정시킬 것
- ⑤ 보호자가 조립할 것
- ⑥ 난로, 다리미 등의 위험물 근처, 계단이나 베란다 출입구, 현관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
- ⑦ 유아가 발판을 딛고 의자 아래로 내려오려 하면 보호자가 붙잡을 것
- ⑧ 바퀴가 부착된 제품은 바퀴를 고정하여 사용할 것
- ⑨ 편평한 곳에서 사용할 것
- ⑩ 좌석이나 발판, 등받이, 테이블 등의 구성 요소가 다양한 위치로 조절되거나 빠질 수 있는 형태의 제품은 적절한 조절 및 배치의 방법에 대한 제조자의 설명 등을 참조할 것
- ⑪ 조립하는 제품은 올바르게 안전한 조립을 위하여 사용설명서를 보관할 것

#### 3. 기타

- ① 올바른 사용요령
- ② 올바른 조립 요령(조립 제품에 한함)
- ③ 기타 필요한 사항

### 참고사항

- |          |                                                          |
|----------|----------------------------------------------------------|
| 표시사항     | · 제품 또는 최소 단위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
| 사용상 주의사항 | · 제품최소 단위포장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고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 사용설명서    | · 별도의 사용설명서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고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 어린이제품

## 안전확인 유아용 의자 / 유아용 테이블부착식 의자

### 적용기준

안전확인기준 부속서 8 유아용 테이블부착식 의자

### 적용범위

6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유아가 식사를 주된 목적으로 사용하며 식탁 높이까지 올리기 위해 테이블에 부착하여 안정적으로 위치하고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된 유아용 테이블부착식 의자(이하 의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표시사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X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사용가능한 테이블 두께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연령
- 한계체중
- 사용상주의사항

### 사용설명서

#### 1. 경고

- “⚠경고 : 유아를 혼자 놓아두지 말 것”
- “⚠경고 : 36개월을 초과하는 유아는 사용하지 말 것”

#### 2. 주의

- ①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시트나 발걸이 부분에 유아를 세워두지 말 것
- ② 전도의 위험이 있으므로 유아의 몸을 손잡이 너머 앞으로 내밀게 하지 말 것
- ③ 유연한 플라스틱 포장재는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유아의 손이 닿지 않도록 할 것
- ④ 안전장치는 몸에 맞고 바르게 고정시킬 것
- ⑤ 보호자가 조립할 것
- ⑥ 테이블면이 유리 등과 같이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의 것이나 간이테이블과 같이 움직이기 쉬운 것, 보조테이블, 외다리 테이블, 테이블에 깔개나 식탁보가 있는 경우 그리고 유아의 다리가 닿을 수 있는 테이블에는 사용하지 말 것
- ⑦ 유리 등 깨지기 쉬운 재질의 테이블에는 사용하지 말 것
- ⑧ 의자는 테이블에 확실히 고정된 상태에서 사용해야 하며 불안정한 테이블에는 사용하지 말 것
- ⑨ 편평한 곳에서 사용할 것
- ⑩ 조립하는 제품은 올바르게 안전한 조립을 위하여 사용설명서를 보관할 것

#### 3. 기타

- ① 올바른 사용요령
- ② 올바른 조립 요령(조립 제품에 한함)
- ③ 기타 필요한 사항

### 사용상 주의사항

#### 1. 제품 본체

- “⚠경고 : 유아를 혼자 놓아두지 말 것”
- “안전장치는 몸에 맞고 바르게 고정시킬 것”

#### 2. 제품 본체 또는 최소 단위 포장

- ① 경고
  - “⚠경고 : 유아를 혼자 놓아두지 말 것”
  - “⚠경고 : 36개월을 초과하는 유아는 사용하지 말 것”
  - “⚠경고 : 입에 넣으면 프릴레이트계 가스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
- ② 주의
  - 사용가능한 테이블의 두께 내에서만 사용할 것
  - 전도의 위험이 있으므로 유아의 몸을 손잡이 너머 앞으로 내밀게 하지 말 것
  - 유연한 플라스틱 포장재는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유아의 손이 닿지 않도록 할 것
  - 안전장치는 몸에 맞고 바르게 고정시킬 것
  - 테이블면이 유리 등과 같이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의 것이나, 간이테이블과 같이 움직이기 쉬운 것, 보조테이블, 외다리테이블, 테이블에 깔개나 식탁보가 있는 경우 그리고 유아의 다리가 닿을 수 있는 테이블에는 사용하지 말 것

### 참고사항

####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 단위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 사용상 주의사항

- 제품최소 단위포장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고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사용설명서

- 별도의 사용설명서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고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어린이제품

## 안전확인 어린이용 자전거 / 어린이용 자전거

### 적용기준

안전확인기준 부속서 9 어린이용 자전거

### 적용범위

어린이 및 유아가 사용하는 이륜자전거로 안장(시트)의 최대 높이가 435 mm 초과, 635 mm 미만인 이륜자전거에 적용하며, 묘기에 사용되는 특수 자전거(예 : BMX 자전거)는 제외한다.

**비고 :** 안장(시트)의 최대 높이가 435 mm 이하인 경우 안전확인 완구에 따른다.

### 표시사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연령
- 사용상 주의사항

**“경고! 입에 넣으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

### 사용상 주의사항

- 1) 자전거가 설계된 용도의 유형(사용이 적합한 지형의 종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위험 경고
- 2) 사용 준비 과정 - 사용자에게 적합하도록 안장 높이 조절하는 방법, 시트 포스트 및 핸들바 스템 에 삽입 깊이 경고에 대한 설명, 전륜 후륜 브레이크 사용에 대한 설명, 백 페달 브레이크의 올바른 사용법.
- 3) 보호자가 취급 설명서를 읽고 사용상의 주의 사항을 지도할 것 (특히 백 페달 브레이크)을 포함하여 아동에게 적절하게 가르쳐줄 것.
- 4) 최소 안장 높이 표시
- 5) 장착된 조정 가능 서스펜션 시스템을 조정하는 권장 방법.
- 6) 안전한 사용 권장 지침 - 자전거 안전보호장구 사용법 및 브레이크, 타이어, 핸들, 림을 포함해 습한 날씨에서 제동 거리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의 정기적인 점검
- 7) 화물과 사람을 더한 하중 가능 총 중량 및 최대 총 중량(자전거+사용자+화물) 및 바구니 적재 하중.
- 8) 자전거에 집간 또는 아동 시트를 장착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 표시
- 9) 자전거를 공공도로에서 사용할 때 교통법규 준수 교육
- 10) 정상적인 사용 및 유지 보수 관련 내용
- 11) 핸들바, 핸들바 스템, 안장, 시트 포스트, 바퀴의 권장 고정사항.
- 12) 보조바퀴의 장착, 조정, 분리 및 보조바퀴 사용시 위험에 대한 경고.
- 13) 조립되지 않은 공급 부품의 올바른 조립 방법.
- 14) 윤활 작업 - 윤활 작업 빈도 및 위치
- 15) 올바른 체인 장력 및 이를 포함해 다른 구동 메커니즘 조정 방법.
- 16) 기어 및 기어 작동 조정 방법.
- 17) 브레이크의 조정 방법 및 마찰 구성요소의 교체에 대한 권장사항.
- 18) 일반적인 유지보수 권장사항(점검방법 및 위치 등)
- 19) 안전에 핵심적인 부품의 경우 정품 교체 부품만을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
- 20) 적절한 스페어 부품 - 타이어, 튜브, 브레이크 마찰 구성요소
- 21) 액세서리 - 액세서리가 장착된 경우 그 작동법, 유지보수법(필요한 경우), 관련 스페어 부품 (예: 전구) 등에 대한 세부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22) 바퀴축의 캡너트가 변형 또는 파손된 경우 즉시 점검을 받을 것
- 23) 기타 관련정보

### 참고사항

#### 표시사항

- 자전거에는 잘 보이는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 어린이제품

## 안전확인 학용품 / 학용품

### 적용기준

안전확인기준 부속서 11 학용품

### 적용범위

학교나 가정에서 학습을 도와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제품에 유해물질을 함유할 우려가 있거나 도안이나 문장이 어린이에게 비교육적이거나 정서생활에 유해할 우려가 있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하여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 정한 학용품을 말하는 것으로 크레용·크레파스, 연필류·연필심, 샤프연필·샤프 연필심, 지우개, 파스텔, 그림물감, 분필, 마킹펜류, 연필깎이, 필통, 색종이, 공책, 스케치북, 문구용품, 악기류 등을 말한다. 학용품으로 볼 수 있는 제품 중 사무용품 및 전문가용으로 사용되고 해당 표시가 되어있는 학용품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표시사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연령
- 사용상 주의사항

### 사용상 주의사항

1. 용도 이외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2. 입에 대거나 입에 넣고 빨면 안 됩니다.
3. 심의 끝부분에 찢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36개월 미만 어린이 사용 시 반드시 어른의 감독 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5. 사용 후에 손을 씻어야 합니다.
6.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7. 화기에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8. 직사광선과 고온을 피해야 합니다.
9. 케이스 모서리에 찢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0. 어린이가 삼킬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질식, 호흡곤란).
11. 이물질 제거를 위하여 분해 조립 시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하도록 하십시오.
12. 경고(항기 나는 제품에 한한다) : 제품의 최소단위포장에 다음의 "36개월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경고 그림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3. 경고(제품의 최소단위 포장에 "피부 분장용 사용금지"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 참고사항

####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 단위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외의 한글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 사용상 주의사항

- 제품 또는 포장이외의 사용설명서에 쉽게 지워지지 않고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주의사항을 표시하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하거나 다른 적절한 용어로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 어린이제품

## 안전확인 보행기 / 보행기

### 적용기준

안전확인기준 부속서 12 보행기

### 적용범위

유아가 혼자서 일어설 수 있을 때부터 혼자서 걸을 수 있을 때까지의 보행보조 및 운동 등에 사용되는 유아용 보행기(이하 “보행기”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치료 목적의 유아용 보행기와 팽창하는 부품이 유아를 지지하는 보행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보행기가 변형되어 다기능을 갖는 제품의 경우 해당 품목의 안전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보행기가 흔들의자 형태로 변경되는 경우는 완구 안전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주 팽창하는 부품만이 유아를 지지하는 보행기는 구조 강도 유지의 문제로 이 기준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 표시사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연령
- 한계체중(kg)
- 사용상주의사항(제품본체)

### 사용상 주의사항

- 경고
  - “⚠경고: 보호자는 유아를 혼자 놓아두지 마시오.”
  - “⚠경고: 계단 등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 사용하지 마시오.”
  - “⚠경고: 입에 넣으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

### 사용설명서

#### 1. 경고

- ⚠경고: 보호자는 유아를 혼자 놓아두지 마시오.”
- ⚠경고: 계단 등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 사용하지 마시오.”

#### 2. 주의

- 사용 전에 설명서를 숙지하고 계속 보관하십시오.
- 설명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유아가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 부품이 부러지거나 소실된 경우 사용하지 마시오.
- 사용시간이 20분 이내로 사용하십시오.
- 6개월 이상의 혼자 앉을 수 있는 유아에게만 적합합니다.
- 12 kg 이상의 걸을 수 있는 유아에게는 부적합합니다.
- 제조사가 인정하지 않는 부품은 사용하지 마시오.
- 보행기는 실내에 한정하여 사용하고, 실외에서는 사용하지 마시오.
- 접이식 기구가 있는 보행기는 사용할 때 고정 장치를 확실하게 걸었는지 확인 후 사용하십시오.
- 보행기에 2명 이상의 유아를 동시에 태우거나 좌석 위에 세우거나 테이블 및 보호 테두리 에 태우지 마시오.
- 위험한 장소(난로 · 다리미 등의 위험물 근처, 계단 · 턱 등의 높이 차이가 있는 곳)에서는 사용하지 마시오.
- 유아가 보행기에 타고 있을 때에는 훨씬 빠르게 멀리 움직일 수 있으므로, 계단이나 평탄하지 않은 바닥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시오.
- 뜨거운 물이나 전선 등 위험물을 제거 후 사용하십시오.
- 창유리나 가구와 부딪치는 위험에 주의하십시오.
- 보행기를 타고 유아 손이 미칠 수 있는 곳에 위험한 물건(칼 등)이 있는지 확인 후 사용하십시오.
- 플라스틱 포장 재료로 인한 유아 질식위험을 피하기 위해 비닐 등의 포장재(bag)에는 “유아에게 질식위험이 있으므로 치우십시오.”라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품을 접고 펴 때 보행기 틈에 손가락 및 신체가 끼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사용 중 수시로 시트 고정나사가 풀리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유아를 태운상태에서 높낮이를 조절 할 경우 성인이 내려 앉아 유아가 다칠 수 있으니 유아를 태운 상태에서는 절대로 높낮이를 조절하지 마시오.
- 보행기 사용 시 유아의 발이 제품의 바퀴나 하판몸체에 끼일 수 있으니 보행기 좌석높이를 유아에 맞게 조정 후 사용하십시오.
- 보행기 몸체를 분리하지 마시오.
- 사용 후 유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 캐스터 기능을 정지시킨으로써 정지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림을 갖춘 제품은, 보행기를 정지 상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보호자가 곁에 있을 것.
- 기타 안전한 사용에 관한 주의, 경고

### 참고사항

#### 표시사항

- 제품과 포장에는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사용상 주의사항

- 제품 본체 및 별도의 사용설명서에는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잘 보이는 곳에 경고문을 표시하여야 한다.



## 어린이제품

## 안전확인 유모차 / 유모차

### 적용기준

안전확인기준 부속서 13 유모차

### 적용범위

유아를 이동시키기 위한 바퀴를 가진 이동수단(유모차, 휴대용을 포함한다)으로 15 kg 이하인 1명 이상의 유아를 태울 수 있는 좌석을 가지고 있으며 부가적으로 20 kg 까지의 어린이가 탑승 가능한 플랫폼을 가진 유모차에 적용한다. 단, 유모차에 부착되는 부속품 (컵홀더, 식판, 양산, 딸랑이, 뽁뽁이, 풋머프 등)은 해당 품목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표시사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

- 종류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연령
- 섬유의 조성
- 사용상 주의사항(제품 본체)

### 사용상 주의사항

#### 1. 경고(잠금장치 및 연결장치 부근에 표시)

“⚠경고 : 주행 중에는 잠금장치를 반드시 고정(잠금)위치에 두고 사용하십시오.”

“⚠경고 : 사용 전에 상자형 해먹 또는 좌석 또는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플랫폼의 부착장치 가 정확하게 잠겼는지 확인 할 것.”

#### 2. 주의(제품 본체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

⚠주의 :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사용하십시오.

⚠주의 : 보호자는 어린이를 혼자 놓아두지 마시오.

⚠주의 : 좌석에 필요 이상의 매트리스를 추가로 두지 마시오.

#### 3. 각 비닐포장에는 “⚠경고 : 질식 사고를 피하기 위해 본 포장은 개봉 직후 어린이 손이 닿지 않도록 치우시오”를 표시하십시오.

#### 4. 기울어진 운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제품에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아동의 다리가 빈 공간으로 미끄러져 질식될 수 있으므로 제조자가 지시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닐 때 기울어진 운반 형태를 취하지 마시오.

#### 5. 접근 영역 내에 사용된 합성수지 재질 중 어린이의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것이 아닌 어린이제품에는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 입에 넣으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

## 사용설명서

- 설명서의 맨 앞장에는 “안전사고 예방 및 제품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유모차 사용 전 반드시 사용 설명서 내용을 숙지 후 사용할 것”이라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 형식에 따라 사용에 적합한 유아의 연령과 사용연속시간을 명시하십시오.
  - A형 : 신생아부터 몸무게 15 kg 이하(약 36개월 까지)의 유아, 연속사용은 2시간 이내가 바람직합니다.
  - B형 : 만 6개월 이상, 몸무게 15 kg 이하(약 36개월 까지)의 유아, 연속사용은 1시간 이내가 바람직합니다.
  -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부착 유모차 : 사용 연령은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의 권장사용연령 (몸무게)에 따르고 연속 사용은 1시간 이내가 바람직합니다.
  - 상자형 해먹형 유모차 : 신생아부터 혼자서 앉거나 일어 설 수 없는(약 만 1세 미만의)유아, 연속 - 33 - 사용은 1시간 이내가 바람직합니다.
- 내부길이가 800 mm 이하인 상자형 해먹에는 다음의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유아는 혼자 앉을 수 있을 때는 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 “이 제품은 도움 없이는 혼자 앉을 수 없고, 손이나 무릎을 사용하여 몸을 올려 밖으로 굴러 떨어질 수 없는 유아에게 적합함. 유아의 최대 사용무게 : 9 kg 이하” 내부길이가 800 mm를 초과하는 상자형 해먹에는 다음의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 “경고 유아는 도움 없이 혼자 앉을 수 있을 때는 하네스 벨트를 사용할 것.”
  - 유모차를 접거나 펼칠 때에는 유모차 주위에 유아는 접근하지 않도록 할 것.
  - 유모차에 정원 이상의 유아를 동시에 태우거나 좌석, 상자형해먹 이외의 곳에 태우지 마시오.
  - 플랫폼에는 몸무게 20 kg 이하의 혼자서 걷기가 충분히 가능한 어린이가 탈 것.
  - 플랫폼은 제조자가 권장하는 유모차 모델에만 사용할 것.
  - 플랫폼은 유모차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 지 확인 후 사용할 것.
  - 플랫폼에는 2인 이상 탑승하지 말 것.
  - 플랫폼의 사용은 보호자 동행 하에서 사용할 것.
  -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사용하십시오.
  - 6개월 이하의 유아에게는 허리벨트 외에 별도의 다리가량이 벨트로도 고정하여 사용하십시오.
  - 보호자는 유아를 혼자 놓아두지 마시오.
  - 보호자는 유아를 혼자 유모차의 가운데에 서 있도록 내버려두지 마시오.
  - 유모차에 유아를 태운 상태로 들거나 이동하지 마시오.
  - 안전벨트를 채울 때는 유아는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 길이를 유아 몸에 잘 맞도록 조이시오.
  - 유모차에 유아를 태울 때마다 유모차가 완전히 펴졌는지, 잠금 고리는 완벽하게 잠겼는지 확인 하시오.
  - 유모차의 운행은 보호자의 보행속도 이내로 유지하십시오.
  - 신호가 바뀌려는 횡단보도에서는 물론, 평지에서도 절대로 뛰지 마시오.
  - 유모차에 타고 있는 유아 주변에는 끈이 달려 있는 장난감이나 물건을 놓지 마시오.
  - 언덕이나 비탈길에서는 물론,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등 평면이 아닐 경우에는 유아를 유모차에서 내린 후 유모차는 따로 운반하십시오.
  - 완전한 경사라도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등반이 각도조절, 핸들전환, 햇빛가리개 등을 작동할 때는 틈새로 유아의 손가락, 발가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등반이와 좌석면과의 각이 150° 이상으로 조절되지 않는 유모차는 다음의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  
 ▲경고 : 이 유모차 좌석은 만 6개월 미만의 유아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 유모차에 타고 있는 유아는 몸을 지나치게 어께쪽이나 좌우 혹은 전후로 움직이면 무게 중심이 달라져서 유모차가 전복될 염려가 있습니다.
  - 유모차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어린이 및 유아는 유모차를 조작하거나 유모차에 접촉하지 않도록 보관할 것.
  - 트레이 위에 뜨거운 것이나 무거운 것을 두지 마시오.
  - 제조자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액세서리는 사용하지 마시오.
  - 기타 안전한 사용에 관한 주의, 경고

## 참고사항

|          |                                                                                                                                                                                                                                                                         |
|----------|-------------------------------------------------------------------------------------------------------------------------------------------------------------------------------------------------------------------------------------------------------------------------|
| 표시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품 또는 최소 단위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가능한 조립요령 및 취급설명서를 별도 첨부하여야 한다.</li> </ul>                                                                                                                                 |
| 사용상 주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취급상 주의사항을 물세탁 방법 등을 포함해 2종류 이상을 한글 또는 기호로 표시한다. 사용설명서의 “사용상 주의사항”란에는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모든 주의내용을 한글로 기술하고 특정부품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경고 표시를 별도로 부착하고 주의사항의 위치, 내용 및 형태를 확실히 눈에 띄게 하여야 한다.</li> </ul> |
| 사용 설명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용설명서에는 한글로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올바르고 안전한 제품사용 및 유지보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사용설명서의 발간일자, 기타 환경 및 자원의 보존 내용이 제공되어야 한다.</li> </ul>                                                                                                                    |



## 어린이제품

## 안전확인 유아용 침대 / 기울어진 요람 및 간이침대

### 적용기준

안전확인기준 부속서 14 유아용 침대

### 적용범위

유아가 혼자 스스로 일어나 앉을 수 있을 나이(즉 6개월 또는 9 kg 의 중량) 까지의 유아용의 고정 또는 접는 기울어진 요람(등받이가 조절되지 않더라도 기울어진 위치의 요람도 적용된다. 6개월 이하의 유아용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로 자동차 좌석에 고정하지 않은 상태로 요람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도 포함한다.) 및 시소식, 그네식, 전동식 등의 간이침대와 유아용 그네에 대하여 적용한다.

### 표시사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

- 모델명 : KPSA-1100
- 사용연령 또는 한계체중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경고 : 유아를 내버려두지 않을 것”  
 “경고 : 높은 곳에서 사용하면 위험합니다.”



“경고! 입에 넣으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

### 사용상 주의사항

1. 유지장치를 항상 사용할 것
2. 제품의 유지관리 및 세척과 세탁에 대한 설명서

기울어진 요람은 추가로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스스로 앉을 수 있는 유아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약 6개월 또는 9 kg 까지의 유아에게만 사용 가능)

“경고 : 조절 요람 속에 있는 아이를 혼자 두지 말 것”

“경고 : 이 요람을 높은 곳에 놓는 것은 위험함”

### 참고사항

#### 표시사항

- 제품의 본체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품의 포장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쉽고 영구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사용가능한 유아의 몸무게나 나이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
  - 적정 인원수와 사용기간
  - 경고 문구 표시(기울어진 요람의 경우)
- ⚠경고 : 스스로 앉을 수 있는 유아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약 6개월 또는 9 kg 까지의 유아에게만 사용 가능)

#### 사용상 주의사항

- 올바른 안전한 조립 및 조절 요람의 사용에 관한 설명서가 제공되어야 하며 설명서에는 다음의 표제를 달아야 한다.
  - ⚠경고-장래의 참고를 위하여 보관할 것”



## 어린이제품

## 안전확인 유아용 침대 / 가정용 유아용 침대 및 요람

### 적용기준

안전확인기준 부속서 14 유아용 침대

### 적용범위

유아가 앉거나 무릎을 구부리거나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의 유아의 이탈을 방지하는 측면 및 끝면이 있는 가정용 유아용침대/요람(휴대용 유아용 요람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표시사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X

- 모델명 : KPSA-1100
- 사용연령 또는 한계체중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유아용 침대/요람 상부에서 최소한 200 mm 밑에 매트리스의 최대 높이 또는 두께를 표시하는 선 또는 다른 표시

“경고! 유아가 앉거나 무릎을 구부리거나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때에는 사용하지 말 것”

“경고! 입에 넣으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

#### 사용상 주의사항

1. 유아용침대/요람은 수평 바닥에 놓아야 한다는 언급
2. 어린이가 유아용침대/요람의 근처에서 보호자의 감독 없이 놀게 해선 안 된다는 언급
3. 유아가 유아용침대/요람에 보호자의 감독 없이 있을 때 고정 위치로 잠겨있어야 한다는 경고
4. 조립에 필요한 모든 부품 및 도구의 명세와 설명서와 조립도면
5. 부품이 깨짐, 찢어짐 또는 없어진 경우에는 유아용침대/요람을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
6. 문구 “유아가 앉거나 무릎을 구부리거나 스스로 일어 설 수 있을 때에는 유아용침대/요람은 유아에게 더 이상 사용하지 말 것”
7. 질식 위험에 노출되는 유아의 몸 또는 옷(예: 끈, 목걸이, 리본 등)의 일부가 끼일 수 있으므로 모든 조립은 항상 적절하게 조여지고 나사가 풀리는지 확인해야 한다.
8. 유아용침대를 프레임 없이 몸체만으로 사용하지 말 것
9. 선택한 매트리스의 두께는 내부수직높이(매트리스의 상부 표면에서 측면 상단까지)가 최소한 침대 바닥의 최고 높은 위치에서 200 mm 이어야 한다는 언급
10. 유아용침대/요람과 함께 팔지 않을 경우 매트리스의 크기 에 관한 권고
11. 유아용침대 근처에 전깃불, 가스불 등과 같이 노출된 불 및 다른 강한 열원의 위험에 주의해야 한다.

### 참고사항

####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는 한글로 제공해야 한다. 설명서는 다음의 표제를 달아야 한다.  
“중요! 장래의 참고를 위하여 보관할 것, 주의 깊게 읽을 것”



## 어린이제품

## 안전확인 유아용 침대 / 가정용 유아용침대 및 접이침대

### 적용기준

안전확인기준 부속서 14 유아용 침대

### 적용범위

유아의 이탈을 방지하는 측면 및 끝면이 있는 가정용 유아용침대 및 접이 침대에 대하여 적용한다. 유아용침대는 침대바닥의 내부길이가 900 mm 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흔들침대와 그네 침대는 포함하지 않는다.

### 표시사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X

- 모델명 : KPSA-1100
- 사용연령 또는 한계체중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상단에서 최소 200 mm 지점에서 매트리스의 최대 높이 또는 두께를 표시하는 침대 측면의 선 또는 기타 표시
- 최대 허용 높이 또는 침대 두께

**“경고! 입에 넣으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

### 사용상 주의사항

1. 접이 침대는 접힘 장치의 잠금장치가 잠겨 졌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
2. 침대 바닥판이 높이가 조절되는 경우 가장 낮은 위치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과 침대 바닥판을 유아가 일어나 앉을 만큼 자랐을 때에는 바로 그 위치로 항상 조절해야 한다. 조절하는 측면이 공급된 경우에는 추가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침대에 유아를 혼자 놓아둘 경우 측면 내림판은 항상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할 것
3. 분리될 수 있는 난간이 침대 바닥판의 가장 낮은 위치보다 위에 침대 바닥판을 지탱하기 위해 설치한 경우에는 침대가 가장 낮은 위치에서 사용되기 전에 이 난간을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설명
4. 조립도면, 조립에 필요한 모든 부품, 도구의 목록 및 명세서, 그리고 필요한 볼트 및 기타 조임 장치의 알람표
5. 발판으로 사용을 할 수 있거나 질식 또는 압착의 위험이 있는 것을 침대에 남겨놓는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설명
6. 선택된 매트리스의 두께는 내부 높이(매트리스 표면부터 침대 프레임의 상단 가장자리까지)가 침대 바닥판의 가장 낮은 위치에서 최소 500 mm 이어야 하고 침대 바닥판의 가장 높은 위치에서 최소 200 mm 가 되어야 한다는 설명
7. 모든 조립 용구는 항상 적절하게 조여야 한다는 설명과 유아의 몸이 끼이거나, 질식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의류(예: 유아의 몸에 사용하는 끈, 목걸이, 리본 등)로 인하여 모든 나사의 풀림이 없는지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설명
8. 간이침대와 함께 판매하지 않을 때 매트리스 크기에 관한 추천
9. 침대 근처나 주위에 있는 전기선로, 가스불 등과 같은 강한 열을 내는 기타 열원 및 노출된 불로 인한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 참고사항

#### 표시사항

- 사용 설명서는 한글로 기술되어야 하며 다음의 문구를 기술해야 한다.  
“중요 : 향후 참고 사항용으로 보관 - 주의 깊게 읽을 것”





## 어린이제품

## 안전확인 유아용 침대 / 가정용 놀이 울타리

### 적용기준

안전확인기준 부속서 14 유아용 침대

### 적용범위

몸무게 15 kg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가정용 놀이 울타리 및 접이식 놀이 울타리(이하 놀이 울타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놀이 울타리가 다기능이거나 다른 기능으로 전환이 가능하면 기저귀 깔이대 등의 관련 규격에도 적합해야 한다.

### 표시사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

- 모델명 : KPSA-1100
- 사용연령 또는 한계체중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놀이 울타리를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의 최대 몸무게

**"경고! 입에 넣으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

### 사용상 주의사항

1. 밑면의 높이 조절이 가능한 경우 어린이가 앉거나 기어 다니거나 스스로 잡아당겨 뽑을 수 있을 만큼 성장하면 가장 낮은 높이가 제일 안전함을 나타내는 경고 사항
2. 분리 가능한 지지 레일은 밑면 최저 부분 위를 지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이며 놀이 울타리를 가장 낮은 위치에서 사용하기 전에 상기 레일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설명
3. 모든 부분의 조립도, 항목 및 설명과 조립을 위해 필요한 도구, 볼트와 기타 필요한 고정 장치들에 대한 도면
4. 놀이 울타리 안에서 목의 얽매임 또는 질식의 위험이 있거나 발판이 될 수 있는 것을 남겨 두는 것과 같은 위험에 대해 사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설명
5. 모든 조립 부속품은 항상 적절히 꼭 조여 있어야 한다는 설명
6. 놀이 울타리 근처에서 직접적인 불꽃 및 전기 막대의 불꽃 또는 가스 불꽃 등과 같이 다른 강한 열원 사용에 대한 위험성을 환기시키는 경고문
7. 놀이 울타리는 밑면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  
놀이 울타리 일부가 파손 또는 찢어지거나 소실된 경우 사용을 금지한다는 설명
8. 청소 및 관리에 대한 권고 사항(가능한 경우)

### 참고사항

#### 표시사항

- 사용 설명서는 한글로 기술되어야 하며 다음을 서두에 명시해야 한다.  
"중요 : 앞으로의 참조를 위해 계속 보관할 것-주의 깊게 읽을 것"



## 어린이제품

## 안전확인 어린이용 온열팩 /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 적용기준

안전확인기준 부속서 15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 적용범위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며, 사용 시에 불, 전기 등의 외부 에너지(산소, 물 등을 제외한다.)를 제공하지 않고 내장된 성분의 화학 반응을 열원으로 하여 온도가 상승되는 온열 용품(이하 주머니 난로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표시사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

- 모델명 : KPSA-1100
- 지속시간 및 최고온도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연령

“경고! 입에 넣으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

#### 사용상 주의사항

1. 저온 화상의 주의
2. 침구 안에서 사용하는 경우 통상적인 온도보다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에 대한 주의
3. 영유아, 피부가 약한 어린이, 신체가 부자유스러운 어린이, 당뇨 및 혈류장애가 있는 어린이의 사용에 관한 주의
4. 영유아의 손이 닿는 곳에 두지 않는다는 주의
5. 붙이는 타입에서는 직접 살에 붙이지 않는다는 주의

### 참고사항

#### 표시사항

- 제품 또는 포장에는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단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표시를 생략하거나 다른 적절한 용어로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기법에 다른 의료기기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용상 주의사항

- 제품 또는 포장 이외의 사용설명서에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위치, 내용 및 형태를 확실히 눈에 띄게 하여야 함.



## 어린이제품

## 안전확인 유아용 캐리어 / 프레임 없는 캐리어

### 적용기준

안전확인기준 부속서 16 유아용 캐리어

### 적용범위

프레임 없는 캐리어란 단단한 소재의 프레임 없이 봉제된 형태의 섬유 구조를 갖는 제품으로 포대기, 슬링, 힙시트 등으로 불리는 제품을 포함한다. 단, 성인의 허리 부분에만 부착하도록 설계 되고 손을 이용하여 유아를 안거나 지지하는 형태의 제품은 제외한다.

**비고** : 프레임이란 캐리어의 전체적인 기본 골격 혹은 테두리를 이루며 금속과 같이 단단한 재질 로 이루어진 구조물 또는 이들의 조립체를 말한다.

### 표시사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

- 종류
- 모델명 : KPSA-1100
- 사용연령
- 한계 체중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상 주의사항

1. 사용 전에 제품의 상태를 확인할 것
2. 전면식 및 혼합식의 제품을 전면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아를 손으로 받쳐서 사용할 것
3. 후면식 및 혼합식의 제품을 후면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머리를 가누지 못하는 유아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
4. 수유 후 30분 이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5. 연속해서 사용할 때는 2시간 이하가 바람직함.
6. 유아나 성인의 체형에 맞게 조절 또는 체결하는 벨트, 버클 이와 같은 조립물이 있는 경우 사용 전 체결상태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것.
7. 필요한 경우는 세탁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기록할 것
8. 유아뿐만 아니라 성인의 움직임으로 유아를 안거나 업고 있는 성인의 무게중심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 주의할 것.
9. 유아를 안거나 업고 있는 성인은 앞으로 숙이거나 기댈 때 유아의 상태를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할 것.
10. 이 캐리어는 일반적인 활동에 적합하지 운동에 적합한 것은 아님
11. 캐리어 뒤에 항상 유아가 정확히 채워져 있고 멜빵과 같은 조립물이 정확히 체결되고 조여져 있음을 확인해야 함.
12. 사용 중에도 유아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항상 추락이나 탈락의 위험성에 대비하며 사용할 것

### 참고사항

#### 표시사항

- 제품 또는 포장에는 표시사항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가능한 사용상 주의사항 및 취급설명서를 별도 첨부한다.
- 주재질이 섬유로 되어 있는 경우, 섬유의 혼용률을 참고로 넣는 것을 권장한다.



## 어린이제품

## 안전확인 유아용 캐리어 / 프레임 있는 캐리어

### 적용기준

안전확인기준 부속서 16 유아용 캐리어

### 적용범위

프레임 있는 캐리어란 단단한 소재의 프레임과 봉제된 형태의 섬유 구조를 갖는 제품을 포함한다.

**비고** : 프레임이란 캐리어의 전체적인 기본 골격 혹은 테두리를 이루며 금속과 같이 단단한 재질로 이루어진 구조물 또는 이들의 조립체를 말한다.

### 표시사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X

- 종류
- 모델명 : KPSA-1100
- 사용연령
- 한계체중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상 주의사항

1. 사용 전에 제품의 상태를 확인할 것
2. 전면식 및 혼합식의 제품을 전면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아를 손으로 받쳐서 사용할 것
3. 후면식 및 혼합식의 제품을 후면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머리를 가누지 못하는 유아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
4. 수유 후 30분 이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5. 연속해서 사용할 때는 2시간 이하가 바람직함.
6. 유아나 성인의 체형에 맞게 조절 또는 체결하는 벨트, 버클 이와 같은 조립물이 있는 경우 사용 전 체결상태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것.
7. 필요한 경우는 세탁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기록할 것
8. 유아뿐만 아니라 성인의 움직임으로 유아를 안거나 업고 있는 성인의 무게중심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 주의할 것.
9. 유아를 안거나 업고 있는 성인은 앞으로 숙이거나 기댈 때 유아의 상태를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할 것.
10. 이 캐리어는 일반적인 활동에 적합하지 운동에 적합한 것은 아님
11. 캐리어 뒤에 항상 유아가 정확히 채워져 있고 멜빵과 같은 조립물이 정확히 체결되고 조여져 있음을 확인해야 함.
12. 사용 중에도 유아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항상 추락이나 탈락의 위험성에 대비하며 사용할 것

### 참고사항

#### 표시사항

- 제품 또는 포장에는 표시사항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가능한 사용상 주의사항 및 취급설명서를 별도 첨부한다.



## 어린이제품

## 안전확인 어린이용 스포츠 구명복 / 스포츠용 구명복

### 적용기준

안전확인기준 부속서 17 어린이용 스포츠 구명복

### 적용범위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스포츠 및 레저활동을 할 때 익사 방지 등 물 속에서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착용하는 의복 형태의 모든 제품(이하 '구명복'이라 한다)을 말하며, 부력 보조복(buoyancy aids)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표시사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XX

#### 1. 구명복

##### ·용도

| 구 분 | 용 도             |
|-----|-----------------|
| A형  | 보호시설이 있는 물에서 사용 |
| B형  | 해변가 또는 악천후에 사용  |

- 모델명 : KPSA-1100
- 사용연령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치수표시
- 간단한 착용 및 고정방법
- 팽창식인 경우 사용기간과 유효기간
- 취급표시 : 보관, 세탁방법 등
- 착용가능 체중 및 최소부력

#### 2. 가스실린더

1. 실린더의 중량(g)
2. 적정 충전량(g)
3. 충전된 가스의 명칭 또는 화학구조식

### 사용상 주의사항

1. "방석(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 금지" 표시
2. 체중 40 kg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어린이에게 이 구명복을 착용해야 물에 뜬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표시
3. 팽창식인 경우 충분히 팽창될 때까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설명
4. "특정 의류와 함께 사용하거나, 특정 환경에서는 그 성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표시

### 사용설명서

1. 팽창식인 경우 충분히 팽창될 때까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설명
2. 착용자가 사용 전에 그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
3. 바다의 상태, 온도(기온)제한 등과 같은 사용상의 적절한 제한사항
4. 교환부품 및 교체방법과 서비스와 유지보수 설명, 포장방법에 관한 설명 등
5. 안전장비 및 기타의류와 관련된 장비로서의 호환성
6. 사용연령

### 참고사항

#### 표시사항

- 각 제품에는 표시라벨이 있어야 하고, 주된 내용이 한글로 기록되어야 한다.
- 표시는 선명한 문자 또는 그림이 포함된 문자를 사용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구명복으로부터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 표시라벨의 식별표시는 최소 10회 이상의 손 세탁에서도 지워지거나 변형이 없이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표시라벨의 크기는 150 mm × 100 mm 이상이어야 한다.
- 용도란에는 표에 해당 용도 부분을 다른 색깔로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용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 사용설명서

- 각 제품에는 사용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 적용기준

안전확인기준 부속서 17 부력 보조복

## 적용범위

부력 보조복이란 착용한 사람이 물에서 35 N 이상의 부력을 가지면서 정상적으로 뜬 상태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의복 형태의 제품으로서,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호지역의 물에서 부피 또는 부력이 더 크면 착용자의 활동에 지장을 주어서 실질적으로 더 위험할 수 있는 경우(예를 들면, 착용자가 위험 상태에서 수영을 하여 빠져 나오거나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조하는 경우 등)에 사용하는 제품을 말하며, 부력 보조복은 30 kg 이하의 체중을 가진 사람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표시사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

1. 부력 보조복  
· 용도

## 용도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호시설이 있는 물에서, 부피 또는 부력이 더 크면 착용자의 활동에 지장을 주어서 실질적으로 더 위험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사용

- 모델명 : KPSA-1100
- 사용연령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치수표시
- 간단한 착용 및 고정방법
- 팽창식인 경우 사용기간과 유효기간
- 취급표시 : 보관, 세탁방법 등
- 착용가능 체중 및 최소부력

## 2. 가스실린더

1. 실린더의 중량(g)
2. 적정 충전량(g)
3. 충전된 가스의 명칭 또는 화학구조식

## 사용상 주의사항

1. “방석(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 금지” 표시
2. “어린이에게 이 부력 보조복을 착용해야 물에 뜬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표시
3. 팽창식인 경우 충분히 팽창될 때까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설명
4. “특정 의류와 함께 사용하거나, 특정 환경에서는 그 성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표시
5. “체중 30 kg 이하인 사람은 사용하지 말 것”

## 사용설명서

1. 팽창식인 경우 충분히 팽창될 때까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설명
2. 착용자가 사용 전에 그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
3. 바다의 상태, 온도(기온)제한 등과 같은 사용상의 적절한 제한사항
4. 교환부품 및 교체방법과 서비스와 유지보수 설명, 포장방법에 관한 설명 등
5. 안전장비 및 기타의류와 관련된 장비로써의 호환성
6. 사용연령

## 참고사항

## 표시사항

- 각 제품에는 표시라벨이 있어야 하고, 주된 내용이 한글로 기록되어야 한다. 표시는 선명한 문자 또는 그림이 포함된 문자를 사용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부력 보조복으로부터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표시라벨의 식별표시는 최소 10회 이상의 손 세탁에서도 지워지거나 변형이 없이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표시라벨의 크기는 150 mm × 100 mm 이상이어야 한다. 용도란에는 표에 해당 용도 부분을 다른 색깔로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용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 사용설명서

- 각 제품에는 사용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용 가족제품 / 어린이용 가족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 달린 운동화 / 어린이용 바퀴 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 아동용 섬유제품  
개별안전기준이 없는 기타 어린이제품



## 어린이제품

### 공급자 적합성확인

## 어린이용 가족제품 / 어린이용 가족제품

### 적용기준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부속서 1 어린이용 가족제품

### 적용범위

어린이용 가족제품이라 함은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가족제품을 말하며, 세부구분은 공급자적합성 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5 아동용 섬유제품 3.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 표시사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XXXXXXXXXXXXXXXXXX

- 품명
- 재료의 종류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차수(권장)
- 사용연령
- 사용상 주의사항

### 사용상 주의사항

#### [별표 2]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방법

1. 가족 및 모피의류 가족 및 모피의류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가족 및 모피의류의 취급상 주의사항은 별도 꼬리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취급상 주의사항                                                                     |
|------------------------------------------------------------------------------|
| 세탁(벤젠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물로 씻을 때에 가족 및 모피의 색이 바래지거나 또는 가족이 경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     |
| 겉쳐두지 않고 온도·습도가 낮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존하는 것으로 하고 특히 장마철에는 응달에서 말릴 것                |
| 가족 및 모피의 때를 빼는 경우에는 가족 및 모피의류 전문용 클리너를 사용하고 특히 스웨이드 가족은 고무지우개로 때를 뺀 후 솔로 털 것 |
| 다림질은 저온에서 두꺼운 종이 또는 헝겊을 대고 해야 하며 중기 다리미는 사용하지 말 것                            |

2. 가방 및 핸드백 가방 및 핸드백은 손질방법 및 보존방법인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 2.1 천연가족의 경우

| 취급상 주의사항                       |
|--------------------------------|
| 건조시킬 때에는 응달에서 말릴 것             |
| 젖었을 때에는 직사일광 또는 불로 건조시키지 아니할 것 |
| 마른 수건이나 기타 부드러운 천으로 닦을 것       |
| 보존 시에는 온도나 습도가 높은 곳을 피할 것      |

#### 2.2 인조가족의 경우

| 취급상 주의사항                                               |
|--------------------------------------------------------|
| 건조시킬 때에는 응달에서 말릴 것                                     |
| 기름기가 있는 장소에서의 사용은 가능한 한 피할 것                           |
| 불 옆에 놓으면 변화하거나 변형될 수 있다.                               |
| 표면의 때를 빼기 위하여 비눗물에 적신 천을 사용하고, 구두약 등의 보혁유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

3. 신발 다음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한다.

#### 3.1 천연가족의 경우

| 취급상 주의사항                       |
|--------------------------------|
| 건조시킬 때에는 응달에서 말릴 것             |
| 젖었을 때에는 직사일광 또는 불로 건조시키지 아니할 것 |
| 솔로 잘 닦을 것                      |
| 보존 시에는 적절한 온도와 습도에서 보관할 것      |

#### 3.2 인조가족의 경우

| 취급상 주의사항                                              |
|-------------------------------------------------------|
| 건조시킬 때에는 응달에서 말릴 것                                    |
| 기름기가 있는 장소에서의 사용은 가능한 한 피할 것                          |
| 불 옆에 놓으면 변화하거나 변형될 수 있다.                              |
| 표면의 때를 빼기 위하여 비눗물에 적신 천을 사용하고, 구두약 등의 보혁유를 사용할 수가 없다. |

4. 기타 가족제품 기타 가족제품은 제품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한다.



## 참고사항

### 표시사항

- 개별제품에는 물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을 하더라도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박음질 또는 그와 동등한 효과의 방법으로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표시자' 표시는 제품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품 문의처', '소비자상담실' '제조자명(국산품에 한함)',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또는 '판매자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치수는 표시할 것을 권장한다.
- 개별제품의 포장 또는 꼬리표, 스티커 등의 표시개별제품 표시가 제품의 사용에 불편을 주거나 미관을 심히 해할 수 있는 지갑류, 가방류, 벨트류, 신발류 등은 1.개별제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이상표, 꼬리표,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이 판매·전달될 때까지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할 수 있으며, 동일 품명으로 2개 이상(상·하의 경우는 제외)의 개수로 모여서 포장된 상태로 판매할 경우는 최소 판매포장단위 표면에 품질표시를 할 수 있다.
- 가죽 및 모피 의류의 표시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 부착서 1 가정용 섬유제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의 표시는 섬유 부분에 한하며, 가죽 및 모피 원단의 표시와 사용상 주의사항은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가죽제품의 표시 규정에 따른다.
- 세부 표시방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기준준수 부착서 3 가죽제품의 표시방법에 따른다.(단 제품의 사용연령 표시를 권장한다)



## 어린이제품

## 공급자 적합성확인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 적용기준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부속서 3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 적용범위

일반 옥외에서의 강렬한 태양 광선에 대한 눈의 보건용 또는 안질환자용의 선글라스중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안경테 및 선글라스(렌즈가 끼워져 있는 안경테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수 용도인 것(산업용 안경테 등)은 제외한다. 다만, 자외선에 대한 보호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완구 용도인 것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06 완구”를 적용한다.

### 표시사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재질 - 테(보기: 플라스틱 등)  
- 렌즈(보기: 유리 등)
- 광선특성(UV-A 차단율(%)/UV-B 차단율(%)/가시광선 투과율(%)/선글라스 필터에 대한 설명)  
※ UV-A와 UV-B를 각각 표시할 수 없을 경우, 자외선 차단율(%)로 표시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 : (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연령

“경고 입에 입에 넣지 말 것”  
“주의! 태양 직접 관찰용이 아닙니다.”

### 표시위치

- 안경테 제품마다 수평방향 렌즈 삽입부 크기, 렌즈간 거리 등 표에 나타난 표시사항을 정해진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제조자, 모델명, 색상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표기 방법은 각인이나 인쇄를 규정하나, 쉽게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로 표시하는 것도 수용하며, 꼬리표 사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표1 안경테의 표시

| 표시                                                                                   | 위치                     |
|--------------------------------------------------------------------------------------|------------------------|
| 제조자 또는 공급자                                                                           | 특정하지 않음                |
| 모델명                                                                                  | 특정하지 않음                |
| 색상                                                                                   | 특정하지 않음                |
| 박스 기호 □와 수평 방향 렌즈삽입부 크기                                                              | 전면부(실행할 수 있을 경우) 또는 다리 |
| 렌즈간 거리                                                                               | 전면부(실행할 수 있을 경우) 또는 다리 |
| 다리의 전체 길이                                                                            | 다리                     |
| 치수는 다음의 순서대로 표기해야 한다.<br>[수평 방향 렌즈삽입부 크기(mm)], [박스기호], [렌즈간 거리(mm)]<br>(예시: 50 □ 20) |                        |
| 비고 : 치수의 측정과 표시 등은 KS G ISO 8624에 따른다.                                               |                        |

### 참고사항

#### 표시사항

- 날개 포장 또는 꼬리표에는 보기 쉬운 곳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사항을 인쇄하거나 꼬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어린이제품

### 공급자 적합성확인

## 어린이용 물안경 / 어린이용 물안경

### 적용기준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부속서 4 어린이용 물안경

### 적용범위

이 기준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수영장 등에서 사용되는 물안경(스노클(호흡관)포함)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잠수(스킨 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등)에 사용하는 물안경 및 도수가 있는 물안경은 제외한다.

#### 표시사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연령

#### 사용상 주의사항

알레르기에 대한 주의사항

#### 사용설명서

1. 올바르게 안전한 제품 사용 및 유지보전에 필요한 정보
2. 사용설명서의 발간일자
3. 기타 환경 및 자원의 보존내용

### 참고사항

####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 사용상 주의사항

- 포장, 사용 설명서 또는 기타 방법으로 알레르기에 대한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하며, 주의사항의 위치, 내용 및 형태를 확실히 눈에 띄게 하여야 한다.



## 어린이제품

### 공급자 적합성확인

##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 적용기준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부속서 5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 적용범위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제작된 우산, 양산 및 우산 겸용 양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제작된 전형적인 우산, 양산으로는 캐릭터 모양의 우산, 양산 또는 캐릭터 등이 우산, 양산에 반영된 제품을 들 수 있다. 다만, 일회성의 용도 등으로 제조된 비닐우산 및 놀이를 위해 제작된 완구 우산 등은 제외한다.

#### 표시사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XXXXXXXXXXXXXXXX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연령
- 사용상 주의사항

####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제조자가 제시하는  
사용상 주의사항 기재

### 참고사항

####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스티커 또는 꼬리표 등에 인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사용상 주의사항

- 제품 또는 포장 외의 한글 사용설명서 등에 제품 특성에 맞는 주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어린이제품

## 공급자 적합성확인 어린이용 바퀴 달린 운동화 / 어린이용 바퀴 달린 운동화

### 적용기준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부속서 6 어린이용 바퀴 달린 운동화

### 적용범위

바퀴 달린 운동화란, 운동화의 밑창에 바퀴를 부착하여 인라인스케이트나 롤러스케이트와 같이 주행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을 말한다.

#### 표시사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신발의 치수
- 사용연령
- 사용상 주의사항

#### 사용설명서

##### 1. 경고

“ 경고 : 안전모 등 안전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한 후 사용하십시오.”

##### 2. 주의

- ① 탑승자와 다른 사람에게 사고의 우려가 있는 포장도로나 차도에서는 타지 마시오.
- ② 만 8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의 감시 하에서 타게 하시오.
- ③ 젖었거나 편평하지 않은 표면에서는 타지 마십시오.
- ④ 장시간 사용시에는 신체에 무리를 주고 나쁜 걸음걸이 습관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 ⑤ 부주의할 경우 추락·넘어짐·충돌 등으로 치명적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⑥ 기타 안전한 사용에 관한 주의, 경고

##### 3. 제조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 1) 바퀴 달린 운동화의 구조에 대한 정보
  - 안전성을 해치는 어떠한 부품의 변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유의사항
- 2) 사용자에 대한 지시사항
  - ① 올바른 조립 및 사용·제동요령
  - ② 올바른 안전보호장구 사용요령
  - ③ 타기 적합한 표면에 대한 추천사항 및 그에 대한 설명
- 3) 점검 및 유지보수에 대한 지시사항
  - 부품(바퀴 등)의 교체시기
- 4) 기타 필요한 사항

#### 사용상 주의사항

##### 1. 경고

주의글씨 등과 쉽게 구별되어 보이는 방법(예 적색글씨, 음양 각표, 또는 주위 글씨보다 훨씬 큰 글씨)로 표시하여야 한다.  
“ 경고 :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한 후 사용한 후 사용하십시오.”

##### 2. 주의

- ① 탑승자와 다른 사람에게 사고의 우려가 있는 포장도로나 차도에서는 타지 마시오.
- ② 만 8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의 감시 하에서 타게 하시오.
- ③ 젖었거나 편평하지 않은 표면에서는 타지 마십시오.
- ④ 장시간 사용시에는 신체에 무리를 주고 나쁜 걸음걸이 습관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 ⑤ 기타 안전한 사용에 관한 주의, 경고

### 참고사항

|          |                                                                                                                 |
|----------|-----------------------------------------------------------------------------------------------------------------|
| 표시사항     | ·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스티커 또는 꼬리표 등에 인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 사용상 주의사항 | · 제품 본체 또는 최소 단위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외의 한글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
| 사용 설명서   | · 올바르게 안전한 제품 사용 및 유지보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나 사용설명서의 발간일자 기타 환경 및 자원의 보존내용이 제공되어야 한다.                                     |



## 어린이제품

### 공급자 적합성확인

##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 적용기준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부속서 7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 적용범위

앞부분 및 뒷부분에 각각 2개의 바퀴를 병렬로 장착시킨 것으로서 구두가 장착된 부분의 최대 길이가 180 mm 이상의 롤러스케이트에 대하여 적용하며, 또한 롤러스케이트는 탈착식 또는 비 탈착식 신발과 사용자의 발에 부착 가능한 장치로 이루어진다. 다만, 베어링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 표시사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연령
- 사용상 주의사항

####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제조자가 제시하는 사용상  
주의사항 기재

#### 사용설명서

1. 별도의 조립 부품이 있는 경우 조립 요령
2. 사이즈 맞추는 방법
3. 보관방법 등

### 참고사항

####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 단위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사용상 주의사항

- 다만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 외의 한글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 사용 설명서

-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장 또는 설명서 등에 표시할 수 있다.



## 어린이제품

## 공급자 적합성확인

## 어린이용 스키용구 / 어린이용 스키용구

### 적용기준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부속서 8 어린이용 스키용구

### 적용범위

어린이용 스키용구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스키를 타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여러 기구를 말하며 알파인용의 스키, 스키화(합성수지제) 및 스키바인딩(이하 “스키용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용이 아닌 스키, 스키화, 스키바인딩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다. 다만, 경기용 및 특수용도인 것은 제외한다.

### 표시사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



#### 1. 스키

- 모델명 : KPSA-1100
- 사용연령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호칭길이

#### 2. 스키화

- 모델명 : KPSA-1100
- 사용연령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신발의 크기

#### 3. 바인딩

- 모델명 : KPSA-1100
- 사용연령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장착설명서

### 사용상 주의사항

#### 1. 스키

- ① 사용 후에는 물기를 제거한 후 보관할 것
- ② 스키바닥은 가끔 왁싱 해줄 것
- ③ 옛지 날이 무디어지면 날을 세워줄 것
- ④ 반쪽으로 자신의 신장에 15cm를 더한 길이의 것을 사용할 것

#### 2. 스키화

- ① 사용 후에는 물기를 제거한 후 보관할 것
- ② 발에 꼭 맞는 스키화를 선택할 것(신어보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을 때 뒷부분에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공백이 남는 것이 좋다)
- ③ 스키는 타기 전에 조임 장치를 확실히 조인 후에 탈 것

### 사용설명서

#### 1. 바인딩 장착설명서

- ① 바인딩의 해제 값의 조절 절차
- ② 스키어에 대한 적절한 해제 값을 정하기 위한 권고
- ③ 바인딩이 정확하게 작동하는데 필요한 솔의 특징
- ④ 부츠 및 솔의 필요조건 및 필요에 따라서 다른 부품 장착의 준비
- ⑤ 지그의 사용, 스키와의 적합성 등의 바인딩의 준비 및 부착
- ⑥ 상이한 솔의 길이 및 높이에 적합한 시기인데 필요한 조절 지시, 솔의 중심 위치 결정과 길이 조절 방법
- ⑦ 부착 후의 기본적인 성능 테스트의 절차
- ⑧ 부착 지그 사용에 의한 바인딩의 부착 권장
- ⑨ 비대칭 해제 및 재 조절을 위한 간단한 절차

#### 2. 바인딩 사용설명서

- ① 권장되는 설정의 중요한 변경에 대한 경고
- ② 바인딩 착탈의 방법, 해제 후의 바인딩의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방법, 전도되었을 경우의 무리한 자세에서 바인딩을 벗어나는 방법 등에 관한 설명
- ③ 시간의 경과에 의한 해제 강도 증가 등의 트러블을 피하는 방법
- ④ 바인딩의 손질·보관·기능 유지의 방법
- ⑤ 전문가에 의한 적절한 용구 사용에 의한 바인딩의 조정 및 매년 조정의 권고
- ⑥ 깊은 눈에서 스키를 탈 때 스키 브레이크만으로는 스키핀 분실 방지가 되지 않는다는 주의

### 참고사항

#### 표시사항

- 제품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및 전화번호는 제품 또는 최소단위포장 등에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 사용상 주의사항

- 포장 상자 또는 동봉하는 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 사용설명서

- 판매점에 대해서 장착설명서를 배포하여야 하며 모든 스키어에게 알기 쉬운 사용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어린이제품

### 공급자 적합성확인

## 어린이용 스노보드 / 어린이용 스노보드

### 적용기준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부속서 9 어린이용 스노보드

### 적용범위

어린이용 스노보드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스키장 등의 눈 위에서 사용되는 스노보드에 대하여 적용한다.

#### 표시사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1. 보드

- 모델명 : KPSA-1100
- 사용연령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호칭길이

##### 2. 부츠

- 모델명 : KPSA-1100
- 사용연령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신발의 크기

##### 3. 바인딩

- 모델명 : KPSA-1100
- 사용연령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어린이용 바인딩을 위한 사용자(45 kg)의 한계체중 및 아래의 표시



25~45kg

#### 사용상 주의사항

##### 1. 보드

- ① 사용 후에는 물기를 제거한 후 보관할 것
- ② 보드바닥은 가끔 왁싱 해줄 것
- ③ 옛지 날이 무디어지면 날을 세워줄 것

##### 2. 부츠

- ① 사용 후에는 물기를 제거한 후 보관할 것
- ② 발에 꼭 맞는 부츠를 선택할 것(신어보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을 때 뒷부분에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공백이 남는 것이 좋다)
- ③ 스키는 타기 전에 조임 장치를 확실히 조인 후에 탈 것

#### 사용설명서

##### 1. 바인딩 조립 설명서

- ① 이 기준의 표시
- ② 사용 대상 범위에 대한 기준(성인/어린이)
- ③ 스노보드 바인딩의 정확한 조립을 위한 정보
- ④ 부츠와 보드 위치에 대한 바인딩의 조정에 대한 정보
- ⑤ 부츠의 필수 조건에 대한 정보
- ⑥ 조립 설명서를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설명
- ⑦ 스노보드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지 끈 또는 제동 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리프트를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는 적절한 미끄럼 방지 패드가 중요하다는 내용

##### 2. 바인딩 사용 설명서 각 스노보드 바인딩은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된 사용 설명서와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 ① 이 기준의 표시
- ② 사용 대상 범위에 대한 기준(성인/어린이)
- ③ 스노보드 바인딩 닫힘 및 열림 방법에 대한 설명
- ④ 적합한 기능을 위하여 부츠 솔과 바인딩의 눈, 얼음, 먼지 등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설명
- ⑤ 유지 보수와 안전, 특히 모든 나사 체결 요소와 부츠 조절 장치의 정기적인 검사에 대한 권장사항
- ⑥ 유지 끈을 항상 사용해야 하고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조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미끄럼 방지 패드를 어떻게 사용 하는지에 대한 설명
- ⑦ 조립 설명서를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설명

### 참고사항

#### 표시사항

- 제품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및 전화번호는 제품 또는 최소단위포장 등에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 사용상 주의사항

- 포장상자 또는 동봉하는 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 사용설명서

- 각 스노보드 바인딩은 조립설명서 및 사용설명서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 어린이제품

## 공급자 적합성확인

## 쇼핑카트 부착품 / 쇼핑카트 부착품

### 적용기준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부속서 10 쇼핑카트 부착품

### 적용범위

어린이를 태울 수 있는 쇼핑카트에 어린이가 사용 중 접근되는 부품에 적용한다.

### 표시사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모델명 : KPSA-1100
- 사용연령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회명(수입품에 한함)
- 어린이의 한계체중 : 15 kg(B형, BK형, 기타형태의 제품에 한한다.)
- 유아의 최대 허용 한계 : 9 kg(AK, BK형, 기타형태의 제품에 한한다.)
- 스스로 앉을 수 있는 어린이에게 사용할 것(어린이용 좌석이 있는 제품에 한함)
- 스스로 앉을 수 없는 유아에게는 사용하지 말것(유아용 요람있는 제품에 한함)  
(약 6개월 또는 9 kg 까지의 유아에게만 사용 가능)

#### 경고

"쇼핑카트에는 최소한 아래에서 보여주는 안전주의 취지의 그림 및 한글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 경고<br>당신의 아이가 카트에서 떨어져 심각한 머리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                     |                         |
|---------------------------------------------|----------------|---------------------|-------------------------|
|                                             |                |                     |                         |
|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할 것                             | 항상 아이와 함께 있을 것 | 바스켓에 절대 아이를 태우지 말 것 | 유아 캐리어 또는 카시트를 사용하지 말 것 |

안전상의 주의 사항을 준수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것  
체중 00 kg 이하의 어린이(유아)만 탑승가능

"컨베이어에서는 계속적으로 핸들을 붙잡고 있을 것"



###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제조자가 제시하는 사용상  
주의사항 기재

### 사용설명서

1. 사용자의 안전하고 적절한 사용요령
2. 유지 및 보수 시 필요사항
3. 적재하는 물건의 크기와 무게의 제한
4. 보관상의 주의사항
5. 정기적인 검사 방법 및 시기
6. 기타 필요한 사항

### 참고사항

#### 표시사항

- 각 제품에는 사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정보 사항을 포함한 표시사항을 반영구적인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재질의 바탕색과 대조되는 색상을 사용하여 영구적으로 눈에 띄게 표시하여야 한다. 안전주의 "경고" 문구는 14포인트(4.92 mm) 이상, 나머지 문구는 8포인트(2.811 mm) 이상 이어야 한다.
- 핸들 부위에 그림과 함께 영구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사용상 주의사항

- 제품 또는 포장 외의 한글 사용설명서 등에 제품 특성에 맞는 주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사용설명서

- 사용설명서를 개별로 제공하여야 한다.



## 어린이제품

### 공급자 적합성확인

## 어린이용 장신구 / 어린이용 장신구

### 적용기준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부속서 11 어린이용 장신구

### 적용범위

어린이용 장신구는 어린이가 장식용으로 사용할 의도로 제작된 반지, 목걸이, 팔찌, 장식용 체인, 귀고리, 펜던트(pendant), 발찌, 손톱장식품, 피어싱, 배꼽찌, 머리장식품, 어린이용 시계, 미아방지용 팔찌(1회용 제외) 등 신체부위에 착용하는 장식품 또는 제품의 구성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어린이용 장신구에서 제외한다.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별도의 안전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품목
- 금(함량이 58.5 % 이상), 은 제품
- 완구 장신구 또는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하는 다른 어린이용 제품(즉, 인형 또는 동물 인형이 착용하는 장신구)
- 액세서리(핸드백, 벨트 등 섬유 제품이나 가죽제품에 포함되는 제품)
- 의류 - 신발류 - 주 용도가 기능성을 지닌 기타 다른 품목(알람, 멜로디, 반짝거림 등 부가기능이 있는 제품은 완구에 포함)

### 표시사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모델명 : KPSA-1100
- 재질
- 사용연령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상 주의사항

**“경고! 입에 넣으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

###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제조자가 제시하는  
사용상 주의사항 기재

### 참고사항

####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 단위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외의 한글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 사용상 주의사항

- 제품 또는 포장 외의 한글 사용설명서 등에 제품 특성에 맞는 주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어린이제품

### 공급자 적합성확인

## 어린이용 키보드 / 어린이용 키보드

### 적용기준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부속서 12 어린이용 키보드

### 적용범위

사용자가 근육의 힘으로 추진력을 얻는 키보드 또는 전동으로 가는 키보드에 적용하며 다만 바퀴에 베어링을 사용하지 않은 것, 연료를 사용하여 작동되는 것, 좌석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 표시사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연령 : “만8세 이상만 사용하십시오.”  
(핸드 브레이크가 없는 제품에 한함)
- 한계하중(제조자가 지정한 한계하중)
- 사용상 주의사항

### 사용상 주의사항

#### 1. 경고

- ① 경고 제품의 날개에 다음의 “⚠경고” 헬멧 등 안전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한 후 사용할 것”을 나타내는 경고 그림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2. 주의

- ① 키보드 사용 시 안전보호장구(헬멧, 무릎 및 팔꿈치보호대, 손목보호대 등)를 착용한 후 탈 것
- ② 미끄러움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나 눈, 비가 올 때에는 타지 말 것
- ③ 차도나 교통이 혼잡한 곳, 급경사진 곳 등 안전하지 못한 장소에서는 타지 말 것
- ④ 탑승자와 다른 사람에게 사고의 우려가 있는 포장도로나 차도에서는 타지 말 것
- ⑤ 만 8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의 감시 하에서 탈 것
- ⑥ 젖어있거나 평평하지 않는 표면에서는 타지 말 것

### 사용설명서

1. 사용 전 안전상태 확인
2. 점프 등 안전하지 못한 묘기주행 금지
3. 임의 또는 불법 개조 금지
4. 사용 시 안전보호장구착용(안전모, 무릎 및 팔꿈치보호대, 손목보호대 등)
5. 기타 필요한 사항(위험한 장소의 사용금지, 도로교통법 준수 등)

### 참고사항

#### 표시사항

- 제품 및 최소 포장단위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손잡이나 발판 포함)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사용상 주의사항은 한글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 표시할 수 있으며 주의사항의 위치, 내용 및 형태를 확실히 눈에 띄게 하여야 한다. 사용설명서에는 올바르게 안전한 제품사용 및 유지보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사용설명서의 발간일자 기타 환경 및 자원의 보존 내용이 제공되어야 한다.

#### 사용 설명서

- 제품본체(또는 최소 단위포장) 및 별도의 사용설명서에는 주의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고 소비자가 쉽게 식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어린이제품

### 공급자 적합성확인

###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 적용기준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부속서 13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 적용범위

인라인롤러스케이트는 바퀴가 운동방향으로 나란히 연결된 운동 장비를 말한다. 인라인스케이트는 탈착식 또는 비탈착식 신발과 사용자의 발에 부착 가능한 장치로 이루어진다. 단 신발창에 바퀴를 삽입하는 구조의 것은 제외한다.

### 표시사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모델명 : KPSA-1100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신발의 치수
- 사용연령

### 사용설명서

#### 1. 경고

- ① “⚠경고” 헬멧 등 안전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한 후 사용할 것”

#### 2. 주의

- ① 탑승자와 다른 사람에게 사고의 우려가 있는 포장도로나 차도에서는 타지 말 것
- ② 만 8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의 감시 하에서 탈 것
- ③ 젖어있거나 편평하지 않는 표면에서는 타지 말 것

#### 3. 제조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 구조에 대한 정보  
“안전성을 해치는 어떠한 부품의 변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유의사항
- 사용자에게 대한 지시사항
  - ① 올바른 조립 및 사용, 제동 요령
  - ② 올바른 안전보호장구 사용요령
  - ③ 타기 적합한 표면에 대한 추천사항 및 그에 대한 설명
- 점검 및 유지보수에 대한 지시사항  
부품(바퀴, 브레이크 등)의 교체시기
- 기타 필요한 사항

### 사용상 주의사항

#### 1. 경고

- ① “⚠경고” 헬멧 등 안전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한 후 사용할 것”

#### 2. 주의

- ① 탑승자와 다른 사람에게 사고의 우려가 있는 포장도로나 차도에서는 타지 말 것
- ② 만 8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의 감시 하에서 탈 것
- ③ 젖어있거나 편평하지 않는 표면에서는 타지 말 것

## 참고사항

### 표시사항

- 제품 또는 최소 단위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 외의 한글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 사용상 주의사항

- 제품(또는 최소 단위포장) 및 별도의 사용설명서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고 소비자가 쉽게 식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어린이제품

### 공급자 적합성확인

## 어린이용 가구 / 어린이용 가구

### 적용기준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부속서 14 어린이용 가구

### 적용범위

가구란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할 용도로 고안되었거나, 명백히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을 말한다. 이 기준은 생후부터 13세 이하의 다양한 연령층의 어린이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사용하도록 의도된 가구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다만 안전확인 완구에서 규정하는 옷장, 서랍장, 테이블, 의자 등 가구류를 모방하여 만든 가구완구 및 가구에 부가적으로 사용된 유리나 전선, 콘센트, 형광등, 전구 등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품목 접근할 수 없는 전기 관련 부품은 제외하며, 체적  $0.3 \text{ m}^3$  이하이거나 전체표면적  $0.5 \text{ m}^2$  이하(예: 길이  $0.5 \text{ m} \times$  너비  $0.65 \text{ m} \times$  높이  $0.65 \text{ m}$ )인 소형제품(크기가 작고 유해물질을 방출하지 않거나 방출하더라도 그 농도가 매우 낮아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구) 또는 3면 이하로 구성된 가구(예: 책꽂이, 발판, 벽 옷걸이, 거울, 우산꽂이, 스톨의자, 비키니 옷장, 행거, 와인/와인잔 수납 랙, 우편함 등)는 목재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시험을 제외한다.

### 표시사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

공급자적합성확인

- 마감재
- 구조부재
- 표면가공
- 쿠션재(의자, 소파 및 매트리스와 함께 있는 경우에 한함)
- 제조연월 : 2020년 10월
-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연령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작은 부품이 있는 가구는 경고 문구를 표기한다.

 **경고!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음  
또는, 아래 기호 사용



### 사용상 주의사항

1. 직사광선 또는 열을 피할 것
2. 옮길 때는 끌지 말고 들며 수평을 유지할 것
3. 가열된 냄비, 주전자 등을 직접 놓지 말 것
4. 열쇠잠금 장치 및 서랍의 사용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 것
5. 어린이가 서랍 또는 선반을 밟고 올라서거나 매달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
6. 가구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제조사에서 공급하는 고정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벽 등에 고정하여 사용할 것
7. 설치장소는 습기가 많은 곳은 피하여 수평을 유지하도록 바닥을 조정할 것
8.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방출될 수 있는 제품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니 환기가 잘되는 공간에 서만 사용할 것
9. “모서리에 부딪쳐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가구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10. 제품의 상부면에는 되도록 어떤 물건도 올려놓지 않을 것
11. 카펫(carpet)이나 불안정한 바닥에는 가급적 설치하지 않을 것

### 참고사항

#### 표시사항

- 안전기준 부속서 14의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구조부재는 [표 1], 표면가공은 [표 2], 쿠션재는 [표 3]을 참고하여 표시한다.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한다.

#### 사용상 주의사항

-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것에 대하여는 생략하거나 다른 적당한 표시로 변경할 수 있다.



## 어린이제품

### 공급자 적합성확인

### 아동용 섬유제품 / 아동용 섬유제품

#### 적용기준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부속서 15 아동용 섬유제품

#### 적용범위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의 아동용 섬유제품에 대해 규정한다. 다만, 맞춤복은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며, 놀이에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가장복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완구)**의 안전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아동용 섬유제품의 세부분류는 공급자적합성확인기준 부속서 15의 **[표 1]**을 적용한다. 다만, **[표 1]**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아동용 섬유제품의 세부분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 안전기준 부속서1 가정용 섬유제품**의 세부분류를 따른다.

#### 표시사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1. **의류**(의의류, 중의류, 내의류, 아동용 의류, 학생복, 한복 등)
  -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 겉감, 안감, 충전재(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에 한 한다), 다운제품은 솜털(다운), 깃털(페더), 기타로 구분하여 %로 표시
  -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제조연월, 최초판매시즌, 로트번호** 등의 어느 하나를 표시
  - **치수**
  - **사용연령**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취급상 주의사항**
2. **의류 이외의 섬유제품**(이불 및 요, 모포, 침낭, 카페트, 방석류, 쿠션류, 신발류, 솜, 가방, 커튼 등)
  -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 겉감, 안감, 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은 충전재 병기, 다운제품은 솜털(다운), 깃털(페더), 기타로 구분하여 %로 표시
  -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제조연월, 최초판매시즌, 로트번호** 등의 어느 하나를 표시
  - **치수**(솜, 가방, 커튼 등 일부 제품은 생략)
  - **사용연령**
  -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 **취급상 주의사항**

#### 사용상 주의사항

1. 취급상 주의 표시
  - 1) 물세탁 방법
  - 2) 산소 또는 염소표백의 거부
  - 3) 다림질 방법
  - 4) 드라이클리닝
  - 5) 짜는 방법
  - 6) 건조방법
2. 기타 취급상 주의·경고 문구
  - 1) 녹 및 피부 접촉 주의사항
  - 2) 불꽃주의
  - 3) 아동이 입을 수 있는 섬유제품의 작은 부품에 대한 주의사항  
“주의! 작은 부품이 탈락되면 삼킬 수 있음”
  - 4) 아동이 사용하는 연질 또는 발포된 합성수지 재질의 신발에 대한 주의사항  
“주의! 신발이 에스컬레이터 등에 깔 수 있음”



불꽃주의

## 참고사항

|          |                                                                                                                                                                                                                                                                                                                                                                                                                                                                                                                                                                                                                                                                                                                                                                                                                                                                                                                             |
|----------|-----------------------------------------------------------------------------------------------------------------------------------------------------------------------------------------------------------------------------------------------------------------------------------------------------------------------------------------------------------------------------------------------------------------------------------------------------------------------------------------------------------------------------------------------------------------------------------------------------------------------------------------------------------------------------------------------------------------------------------------------------------------------------------------------------------------------------------------------------------------------------------------------------------------------------|
| 표시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제품에는 세탁을 하더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박음질 또는 그와 동등한 효과의 방법으로 공통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다만 '표시자' 표시는 제품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품문의처', '소비자상담실', '제조자명(국산품에 한함)', '수입자명', '판매자명'으로 표시할 수 있음. 또한 치수는 표시할 것을 권장함.</li> <li>• 개별제품에는 제품의 추적이 가능한 제조연월, 최초 판매시즌, 로트번호, 제품의 스타일번호, 바코드 번호, QR코드 등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여 동제품이 언제 만들어 졌는지 객관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피부 접촉이 일시적인 타올 및 직접 착용하지 않은 가방, 방석류, 모기장, 덮개, 수의 등은 자체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번호를 관리하고 제품에 직접 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li> <li>• 개별제품의 박음질 표시가 제품의 사용에 불편을 주거나 미관을 심히 해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류, 런닝셔츠, 팬티류, 양말류, 장갑류, 수영복, 체조복, 스카프, 머플러, 손수건, 가발류, 모자, 기저귀류, 신발, 수의류, 타올, 넥타이, 모기장, 덮개류, 턱받이류는 개별제품의 포장, 꼬리표 또는 스티커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침낭 및 카페트는 방염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박음질 또는 그와 동등한 효과의 방법으로 개별제품의 표시한 경우도 소비자가 포장을 개봉하지 않고 확인할 수 없는 개별제품의 표시도 포장 또는 꼬리표, 스티커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li> <li>• 동일 품명으로 2개 이상(상하의 경우는 제외)의 개수로 모아서 포장된 상태로 판매할 경우는 최소 판매 포장 단위 표면에 표시할 수 있다.</li> </ul> |
| 사용상 주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급상 주의사항은 부속서 1 [별표 8]에 따라 제품에 적합한 내용을 물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방법 등을 포함해 4 종류 이상을 한글 또는 기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기호는 KS K 0021 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류, 손수건, 타올, 모기장, 덮개류, 가방 등은 취급상 주의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li> <li>• 금속 액세서리를 사용한 제품에는 부속서 1 [별표 8](7)에 따라 녹 및 피부 접촉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li> <li>• 불꽃 접근시 제품에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속서 1 [별표 8](8) "불꽃주의"의 기호를 추가할 수 있다.</li> <li>• 유아 또는 아동이 입을 수 있는 섬유제품이 안전확인 부속서 36 제2부4.2시험(작은 부품시험)에서 통과되는 작은 부품이 부착된 경우에는 부속서 1 [별표 8(9)에 따라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li> <li>• 유아 및 아동이 사용하는 연질 또는 발표된 합성수지 재질의 신발은 부속서 1 [별표 8](10)에 따라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li> <li>• 섬유제품의 치수를 표시할 경우는 부속서 1 [별표 9]에 따른다.</li> <li>• 안전요건 적합 표시 안전요건에 적합함을 수요자에게 알리기 위해서 표시사항에 "기준에서 정한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적합한 제품임"의 표시문구를 추가할 수 있다.</li> </ul>                                                                                                                                                 |



## 어린이제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개별안전기준이 없는 기타 어린이제품

### 적용기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적용범위

이 기준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하여 공통으로 적용한다. 일반적인 사용 중 어린이에게 닿을 수 없는 제품의 구성부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표시사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주소 및 전화번호(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연락처로 제품에 대해 교환, 환불 등의 책임을 가짐)
  - 제조연월(2020년 10월)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 사용연령(또는 권장사용연령)
  - 크기·체중의 한계
- \* 착용 또는 탑승용 어린이제품과 같이 크기 및 체중 제한이 있는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자체 및 포장에 크기와 체중 등의 한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 사용상 주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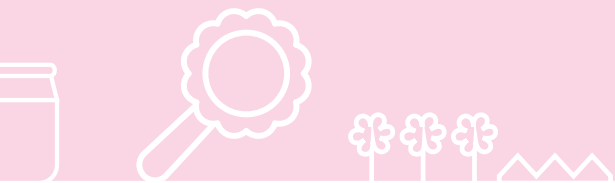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제조자가 제시하는  
사용상 주의사항 기재

###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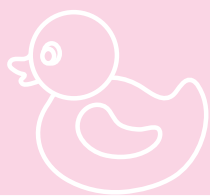
#### 표시사항

- 필요 시 사용상 주의사항 또는 사용 설명서 어린이가 이해하기 쉬운 문구를 사용한다.
- “KC 마크는 이 제품이 공통안전기준에 적합하였음을 의미합니다.”라는 문구를 12 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해당 제품에 눈에 띄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크기가 작아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제품의 외형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글자크기를 줄일 수 있고, 문구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확인이 가능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공통안전기준 표시사항은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 또는 최소 포장단위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꼬리표를 붙이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최소한 위에 열거된 항목을 표시한다. 다만, 개별 안전기준의 표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안전기준의 표시사항에 따른다.





## 부록



지정 시험 기관  
안전관리대상 세부품목



## 부록

### ① 지정 시험 기관

#### 시험 · 인증기관 안내

| 기관명                 | 소재지                                | 대표번호         | 홈페이지                                                                    |
|---------------------|------------------------------------|--------------|-------------------------------------------------------------------------|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0                    | 055-791-3114 | <a href="https://www.ktl.re.kr">https://www.ktl.re.kr</a>               |
|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KCL)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가산동)         | 02-2102-2500 | <a href="http://www.kcl.re.kr">http://www.kcl.re.kr</a>                 |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중앙동)               | 02-2164-0011 | <a href="http://www.ktr.or.kr">http://www.ktr.or.kr</a>                 |
|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KTC)    |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27번길 22                | 1899-7654    | <a href="http://www.ktc.re.kr">http://www.ktc.re.kr</a>                 |
| FITI시험연구원(FITI)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3길 79 (마곡동 778)    | 02-3299-8000 | <a href="https://www.fti.re.kr">https://www.fti.re.kr</a>               |
| 한국이류시험연구원(KATRI)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완산로 52 (용두동 232-22)     | 02-3668-3000 | <a href="http://www.katri.re.kr/kr">http://www.katri.re.kr/kr</a>       |
| KOTITI시험연구원(KOTITI)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11 (상대원동 138-7) | 02-3451-7000 | <a href="http://www.kotiti-global.com">http://www.kotiti-global.com</a> |

#### 시험 · 인증기관 담당부서 안내

| 담당기관      | 품목 구분     | 세부품목                                                            | 담당부서              |
|-----------|-----------|-----------------------------------------------------------------|-------------------|
| FITI시험연구원 | 안전인증      | 어린이용 비비탄총,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 안전인증팀             |
|           | 안전확인      |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온열팩,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구명복,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완구, 화장품  |                   |
|           | 공급자 적합성확인 | 어린이용 가족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장신구, 아동용 섬유제품, 기타 어린이제품 | 섬유소비재마케팅팀         |
|           |           |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 섬유소비재사업팀<br>물리시험팀 |
|           |           | 어린이용 가구                                                         | 안전인증팀             |



| 담당기관          | 품목 구분     | 세부품목                                                                                                                                     | 담당부서      |
|---------------|-----------|------------------------------------------------------------------------------------------------------------------------------------------|-----------|
| 한국요류시험연구원     | 안전인증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비비탄총                                                                                                                    | 인증사업본부    |
|               | 안전확인      | 학용품,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완구, 화장품, 학용품,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                                                                          |           |
|               | 공급자 적합성확인 | 어린이용 가족제품,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기타 어린이제품                                                                 |           |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안전인증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 안전인증팀     |
|               | 안전확인      | 유아용 캐리어,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 유아용 캐리어 |           |
|               | 공급자 적합성확인 |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           |
| KOTIT시험연구원    | 안전인증      | 어린이용 비비탄총,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 제품인증팀     |
|               | 안전확인      | 어린이용 스포츠구명복, 학용품, 어린이용 온열팩, 유아용 캐리어,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학용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           |
|               | 공급자 적합성확인 |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가족제품, 기타어린이제품, 아동용 섬유제품                                                                                                   |           |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안전인증      | 어린이 놀이기구                                                                                                                                 | 생활환경평가센터  |
|               |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 어린이제품안전센터 |
|               | 안전확인      | 유모차, 학용품, 완구,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어린이용 자전거, 어린이용 온열팩, 유아용 삼륜차, 유모차, 학용품                                                          |           |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공급자 적합성확인 |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킥보드, 기타어린이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가구, 어린이용 안경테,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 생활제품인증팀   |
|               | 안전인증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비비탄총                                                                                                                    |           |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안전확인      | 유아용 캐리어,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학용품,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                                                | 생활제품인증팀   |
|               | 안전확인      | 유아용 캐리어,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학용품,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                                                |           |



## 부록

### ❶ 안전관리대상 세부품목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안전인증

|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 적용 안전기준                  | 품목명                                                              |
|---------------|--------------------------|------------------------------------------------------------------|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안전기준 부속서 1    | 공기주입 물놀이기구<br>수영보조용품(착용형)<br>수영보조용품(비착용형)                        |
| 어린이 놀이기구      |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기준 부속서 2      | 그네, 미끄럼틀<br>공중 놀이기구<br>흔들 놀이기구<br>스페이스네트<br>폐쇄형 놀이기구<br>충격흡수표면구역 |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안전기준 부속서 3 |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
| 어린이용 비비탄총     | 어린이용 비비탄총 안전기준 부속서 4     | 어린이용 비비탄총                                                        |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안전확인

|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 적용 안전기준                  | 세부품목                                                           |
|----------------------------|--------------------------|----------------------------------------------------------------|
| 유아용 섬유제품                   |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부속서 1      | 외의류 / 중의류 / 내의류<br>침구류 / 신발류 / 양말류<br>장갑류 / 모자류 / 가방류<br>신생아용품 |
|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속서 2   | 어린이용 침대가드<br>유아용 노래개쪼꼭지<br>유아용 노래개쪼꼭지걸이<br>바닥매트                |
|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보호 장구 및 안전모) |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안전기준 부속서 3 | 보호장구 / 안전모                                                     |
|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안전기준 부속서 4   |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
| 아동용 이단침대                   | 아동용 이단침대 안전기준 부속서 5      | 어린이용 이단침대                                                      |
| 완구                         | 완구 안전기준 부속서 6            | 완구                                                             |
| 유아용 삼륜차                    | 유아용 삼륜차 안전기준 부속서 7       | 유아용 삼륜차                                                        |
| 유아용 의자                     | 유아용 의자 안전기준 부속서 8        | 유아용 높은 의자<br>유아용 부스터 의자<br>유아용 테이블부착식 의자                       |
| 어린이용 자전거                   | 안전기준 부속서 9               | 어린이용 자전거                                                       |



|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 적용 안전기준                   | 세부품목                                                               |
|---------------------|---------------------------|--------------------------------------------------------------------|
| 학용품                 | 학용품 안전기준 부속서 11           | 학용품                                                                |
| 보행기                 | 기 안전기준 부속서 12             | 보행기                                                                |
| 유모차                 | 유모차 안전기준 부속서 13           | 유모차                                                                |
| 유아용 침대              | 유아용 침대 안전기준 부속서 14        | 기울어진 요람 및 간이침대<br>가정용 유아용침대 및 요람<br>가정용 유아용침대 및 접이침대<br>가정용 놀이 울타리 |
| 어린이용 온열팩 (주머니난로 포함) | 어린이용 온열팩 안전기준 부속서 15      | 어린이용 온열팩                                                           |
| 유아용 캐리어             | 유아용 캐리어 안전기준 부속서 16       | 프레임 없는 캐리어<br>프레임 있는 캐리어                                           |
|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안전기준 부속서 17 | 스포츠용 구명복                                                           |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공급자적합성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 적용 안전기준                     | 품목명             |
|----------------------|-----------------------------|-----------------|
| 어린이용 가족제품            | 어린이용 가족제품 안전기준 부속서 1        | 어린이용 가족제품       |
| 어린이용 안경테(선글라스를 포함한다) | 어린이용 안경테 안전기준 부속서 3         |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
| 어린이용 물안경             | 어린이용 물안경 안전기준 부속서 4         | 어린이용 물안경        |
|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안전기준 부속서 5     |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
|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 어린이용 바퀴 달린 운동화 안전기준 부속서 6   | 어린이용 바퀴 달린 운동화  |
|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안전기준 부속서 7      |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
| 어린이용 스키용구            | 어린이용 스키 용구 안전기준 부속서 8       | 어린이용 스키용구       |
| 어린이용 스노보드            | 어린이용 스노보드 안전기준 부속서 9        | 어린이용 스노보드       |
| 쇼파카드 부속품             | 쇼파카드 부속품 안전기준 부속서 10        | 쇼파카드            |
| 어린이용 장신구             | 어린이용 장신구 안전기준 부속서 11        | 어린이용 장신구        |
| 어린이용 킥보드             | 어린이용 킥보드 안전기준 부속서 12        | 어린이용 킥보드        |
|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안전기준 부속서 13 |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
| 어린이용 가구              | 어린이용 가구 안전기준 부속서 14         | 어린이용 가구         |
| 아동용 섬유제품             |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부속서 15        | 아동용 섬유제품        |

※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적용한다.



# GuideBook

## Index

### 안전인증

|                             |    |
|-----------------------------|----|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 16 |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 수영보조용품(착용형)    | 17 |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 수영보조용품(비착용형)   | 18 |
| 어린이용 놀이기구 / 그네              | 19 |
| 어린이용 놀이기구 / 미끄럼틀            | 20 |
| 어린이용 놀이기구 / 공중 놀이기구         | 21 |
| 어린이용 놀이기구 / 회전 놀이기구         | 22 |
| 어린이용 놀이기구 / 흔들 놀이기구         | 23 |
| 어린이용 놀이기구 / 스페이스 네트         | 24 |
| 어린이용 놀이기구 / 폐쇄형 놀이기구        | 25 |
| 어린이용 놀이기구 / 충격흡수표면구역        | 26 |
|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 27 |
| 어린이용 비비탄총 / 어린이용 비비탄총       | 29 |

### 안전확인

|                                  |    |
|----------------------------------|----|
| 유아용 섬유제품 / 유아용 섬유제품              | 32 |
|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 어린이용 침대가드          | 34 |
|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 유아용 노리개젓꼭지         | 35 |
|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 유아용 노리개젓꼭지 걸이      | 36 |
|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 비덕매트               | 37 |
|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 보호장구 | 38 |
|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 안전모  | 39 |
|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 40 |
| 어린이용 이단침대 / 어린이용 이단침대            | 41 |
| 완구 / 완구                          | 42 |
| 유아용 삼륜차 / 유아용 삼륜차                | 43 |
| 유아용 의자 / 유아용 높은 의자               | 44 |
| 유아용 의자 / 유아용 부스터 의자              | 45 |
| 유아용 의자 / 유아용 테이블부착식 의자           | 46 |
| 어린이용 자전거 / 어린이용 자전거              | 47 |
| 학용품 / 학용품                        | 48 |
| 보행기 / 보행기                        | 49 |
| 유모차 / 유모차                        | 50 |

## 공급자적합성확인

|                               |    |                                   |    |
|-------------------------------|----|-----------------------------------|----|
| 유아용 침대 / 기울어진 요람 및 간이침대       | 52 | 어린이용 가족제품 / 어린이용 가족제품             | 62 |
| 유아용 침대 / 가정용 유아용 침대 및 요람      | 53 |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 64 |
| 유아용 침대 / 가정용 유아용침대 및 접이침대     | 54 | 어린이용 물안경 / 어린이용 물안경               | 65 |
| 유아용 침대 / 가정용 놀이 울타리           | 55 |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 66 |
| 어린이용 온열팩 /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 56 | 어린이용 바퀴 달린 운동화 / 어린이용 바퀴 달린 운동화   | 67 |
| 유아용 캐리어 / 프레임 없는 캐리어          | 57 |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 68 |
| 유아용 캐리어 / 프레임 있는 캐리어          | 58 | 어린이용 스키용구 / 어린이용 스키용구             | 69 |
| 어린이용 스포츠 구명복 / 스포츠용 구명복       | 59 | 어린이용 스노보드 / 어린이용 스노보드             | 70 |
| 어린이용 스포츠 구명복 / 부력 보조복         | 60 | 쇼핑카트 부속품 / 쇼핑카트 부속품               | 71 |
|                               |    | 어린이용 장신구 / 어린이용 장신구               | 72 |
|                               |    | 어린이용 킥보드 / 어린이용 킥보드               | 73 |
|                               |    |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 74 |
|                               |    | 어린이용 가구 / 어린이용 가구                 | 75 |
|                               |    | 아동용 섬유제품 / 아동용 섬유제품               | 76 |
|                               |    | 개별안전기준이 없는 기타 어린이제품               | 78 |



# GuideBook

## Index 색인(가나다순)

|                           |    |                                   |    |
|---------------------------|----|-----------------------------------|----|
| 개별안전기준이 없는 기타 어린이제품       | 78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 공기주입 물놀이기구1          | 6  |
| 보행기 / 보행기                 | 49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 수영보조용품(비착용형)         | 18 |
| 쇼핑카트 부속품 / 쇼핑카트 부속품       | 71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 수영보조용품(착용형)          | 17 |
| 아동용 섬유제품 / 아동용 섬유제품       | 76 | 어린이용 물안경 / 어린이용 물안경               | 65 |
| 어린이용 가구 / 어린이용 가구         | 75 | 어린이용 바퀴 달린 운동화 / 어린이용 바퀴 달린 운동화   | 67 |
| 어린이용 가죽제품 / 어린이용 가죽제품     | 62 | 어린이용 비비탄총 / 어린이용 비비탄총             | 29 |
| 어린이용 놀이기구 / 공중 놀이기구       | 21 | 어린이용 스노보드 / 어린이용 스노보드             | 70 |
| 어린이용 놀이기구 / 그네            | 19 |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 40 |
| 어린이용 놀이기구 / 미끄럼틀          | 20 | 어린이용 스키용구 / 어린이용 스키용구             | 69 |
| 어린이용 놀이기구 / 스페이스 네트       | 24 | 어린이용 스포츠 구명복 / 부력 보조복             | 60 |
| 어린이용 놀이기구 / 충격흡수표면구역      | 26 | 어린이용 스포츠 구명복 / 스포츠용 구명복           | 59 |
| 어린이용 놀이기구 / 패쇄형 놀이기구      | 25 |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 보호장구  | 38 |
| 어린이용 놀이기구 / 회전 놀이기구       | 22 |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 안전모   | 39 |
| 어린이용 놀이기구 / 흔들 놀이기구       | 23 |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 64 |
|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 68 | 어린이용 온열팩 /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 56 |



|                                 |    |                             |    |
|---------------------------------|----|-----------------------------|----|
|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 66 | 유아용 침대 / 가정용 유아용침대 및 접이침대   | 54 |
| 어린이용 이단침대 / 어린이용 이단침대           | 41 | 유아용 침대 / 기울어진 요람 및 간이침대     | 52 |
|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 74 | 유아용 캐리어 / 프레임 없는 캐리어        | 57 |
| 어린이용 자전거 / 어린이용 자전거             | 47 | 유아용 캐리어 / 프레임 있는 캐리어        | 58 |
| 어린이용 장신구 / 어린이용 장신구             | 72 |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 27 |
| 어린이용 키보드 / 어린이용 키보드             | 73 | 학용품 / 학용품                   | 48 |
| 완구 / 완구                         | 42 |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 비덕매트          | 37 |
| 유모차 / 유모차                       | 50 |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 어린이용 침대가드     | 34 |
| 유아용 삼륜차 / 유아용 삼륜차               | 43 |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 유아용 노리개젓꼭지 걸이 | 36 |
| 유아용 섬유제품 / 유아용 섬유제품             | 32 |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 유아용 노리개젓꼭지    | 35 |
| 유아용 의자 / 유아용 높은 의자              | 44 |                             |    |
| 유아용 의자 / 유아용 부스터 의자             | 45 |                             |    |
| 유아용 의자 / 유아용 테이블부착식 의자          | 46 |                             |    |
| 유아용 침대 / 가정용 놀이 울타리             | 55 |                             |    |
| 유아용 침대 / 가정용 유아용 침대 및 요람        | 53 |                             |    |

## 알기쉬운 어린이제품 표시사항 작성 가이드북

**1쇄 발행** 2020년 12월 1일

**2쇄 발행** 2021년 12월 31일

**발행처** : 한국제품안전협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310호(구로동)  
[www.ksafety.kr](http://www.ksafety.kr)

**발행인** : 이영식

**전 화** : 02-890-8300

**팩 스** : 02-890-8309

**주 최**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지하며,  
이 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한국제품안전협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